

英國「요오맨」에 관한 一研究 (其 1)

金 宗 炫

目 次

- I. 序 言
- II. 「요오맨」의 語義
- III. 農民保有地의 分化와 「요오맨」層의 成立
- IV. 「요오맨」의 富裕化 過程
 - 1. 土地保有形態와 經濟的 諸負擔의 問題
 - 2. 保有地의 增大와 農業經營
(以上 本 號)
- V. 農業變化와 「요오맨」
 - 1. 農業變化와 「요오맨」의 地位
 - 2. 「요오맨」의 興隆過程
- VI. 結 語

I. 序 言

英國農村의 近代化 過程에서 16世紀가 가지는 意義가 매우 重要하다는 것은 再言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16世紀가 一般的으로 말해서 莊園制度의 解體와 함께 共同體的 基礎위에 선 農業慣行이 「第1次」 農業革命이라는 名稱 밑에서 集約的으로 表現되는 一聯의 諸變化에 依해서 近代의 農業制度에 移行하는 하나의 過渡的 段階이기 때문이다. 勿論 近代의 農業에의 完全한 移行은 18世紀中葉 以後에 이루어지는 「第2次」 農業革命에⁽¹⁾ 依해서 遂行되는 것이나 그 萌芽는 16世紀의 農業上의 變化에서 이미 찾아 볼 수 있다. 즉 16世紀 英國農村에서는 이미 近代 英國農業의 特徵이라고 일컬어지는 農業三分制 (tripartite division)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²⁾ 따라서 英國農村의 近代化過程을 考察할때

(1) 農業革命을 「第1次」와 「第2次」로 區分하는 通說의 形成過程에 關해서는 小松芳喬著 『封建英國とその崩壞過程』 269—270面 參照.

(2) R.H. Tawney, *The Agrarian Problem in the Sixteenth Century*, London, 1912, p. 1.
S.W. Ashley,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England*, London, 1914, p. 3

16世紀가 問題되는 것도 基本的으로는 이러한 理由에서 結果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와같이 重要的 意義를 가지는 16世紀의 英國農村을 그것을 構成하고 있는 特定階層을 통해서 考察하려고 할 때 當時의 農村에서 가진 地位로 보아 먼저 우리의 前面에 나타나는 것은 「요오맨」(yeoman)의 存在이다. 그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類例를 볼 수 없는 英國特有的 階層이며 當時의 社會에서 「政治體가 立脚하는 基礎」이며 「國家의 힘과 德을 表示하는 것」이라고 생각된 階層이 었다. 歷史的 存在였던 「요오맨」이 當時의 農村社會에서 한 役割은 다른 어느 農民層보다도 重要했으며 그것은 그들이 當時의 많은 著者들의 注目對象이 되고 있었다⁽³⁾는 事實에 依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요오맨」에 關한 研究는 英國農業史의 研究水準이 高度의 段階에 達한 現在에서도 若干의 것을 除外하면 그가 가지는 重要性에 對應할 수 있는 程度까지 充分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近年에 이르러 「요오맨」에 關한 關心이 높아지고⁽⁴⁾ 地方史研究의 成果와 아울러 「요오맨」의 存在形態가 漸次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特히 日本에서는 戶谷氏の 研究以來 「요오맨」의 研究가 活潑히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그들 研究는 一般的으로 「요오맨」을 16·7世紀 英國農村에서의 獨立自營農民層=中產的 生産者層으로 把握하고 그것을 基盤으로 해서 英國의 近代資本主義가 生成 發展한다는 問題意識에 依해서 이루어졌으며 또 큰 成果를 거두어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요오맨」의 問題가 모두 論究되었다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이며 特히 從來의 問題意識으로 나타나는 「요오맨」의 範疇的 또는 理論的 把握에서 그의 歷史的 存在形態에 눈을 돌려 볼 때 거기에는 아직 研究되어야 할 많은 餘地가 있는 것이다.

本稿는 「요오맨」이 어떠한 歷史過程에서 成立하고 16世紀 英國農村에서 어떻게 自己의 地位를 改善하면서 農民의 中堅層이 될 수 있었던가를 考察한 것이다. 農民속에서 出現하는 富農層=「요오맨」의 存在가 農村社會에서 重要的 地位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15世紀에서 16世紀의 일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歷史過程에서 出現했는가라는 問題는 16世紀의 「요오맨」을 考察함에 있어서 우선 다루어져야 할 問題이다. 그리고 「요오맨」의 地位는 當然히 그 土地保有形態와 經濟的 諸條件에 依存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요오맨」의 地位를 考察할 때 基本的인 것이다. 同時에 이 時期는 農業革命期였으므로 그러한 社會經濟的 背景에서 「요오맨」의 盛衰를 考察해야 할 것이다.

(3) Tawney, *op. cit.*, p. 21.

(4) 「캠벨」女史는 『教科書의 한부분에 「요오맨」의 意味를 說明하는데 그치던 것이 1面 또는 數面을 이에 充當시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M. Campbell, *The English Yeoman under Elizabeth and the Early Stuarts*, London, 1942, p. 4.

II. 「요오맨」의 語義

「요오맨」이라는 語句는 後述하는 바와같이 매우 曖昧하고 까다로운 意味를 가지고 있으며 時代의 推移에 따라 그 意味內容도 變化해서 이것을 明確히 定義한다는 것은 困難한 것 같다.⁽¹⁾ 「요오맨」에 關한 諸論爭도 그 語句가 가지는 曖昧性으로 由來하는 理解의 相異에 그 原因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16世紀 「요오맨」의 存在形態를 考察하려고 하면 이 語句가 가지는 意味를 明確히 理解해 둘 必要가 있을 것이다.

「요오맨」이라는 語句는 14世紀의 『캔터베리이야기』 (*The Canterbury Tales*)에 이미 나타나고 있으나 거기서는 「요오맨」은 騎士(kinght)의 從者이며 騎士에 對한 個人的 關係로 나타나고 있다. 또 14世紀의 「벨러드」로서 有名한 『農民피어스』 (*Piers Plowman*)에서는 殘存하고 있는 세가지 「텍스트」에서 「요오맨」을 國王 貴族 그리고 領主의 「從者」「隨員」「家臣」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卑賤한 것이 아니라 名譽로운 職責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用法은 「벨러드」에서만이 아니라 當時의 公文書等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²⁾ 따라서 「요오맨」이 軍事的 性格을 가지고 매때로 軍役に 服務하고 있다는 것은 事實이나 同時에 그들은 「國王의 요오맨」 또는 「領主의 요오맨」으로서 그들의 從者로서 半軍事的 封建的 또는 半封建的 性格을 가진 半身分的인 奉仕를 하고 있었다.⁽³⁾ 「요오맨」은 初期에는 土地 保有와는 아무런 關係도 없었던 것이다.

14世紀에서 15世紀가 되면서 「요오맨」은 明白히 從前과는 다른 意味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세익스피어」가 그 作品속에서 使用하고 있는 것과 같은 意味에서 例를들면 “yeoman of the cellar”, “yeoman of the wardrobe”, “yeoman of the bedchamber” 등 王室이나 貴族에 奉仕하는 特殊한 職責을 意味하게 되었다.⁽⁴⁾ 그러나 이 時期에 「요오맨」의 意味가 가지는 가장 重要한 變化는 이 語句가 明白히 土地保有에 關聯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오맨」은 農村社會에서 一定한 社會層을 意味하게 되고 15世紀 以後에는 오로지 이 意味에서 使用되게 되었다. 土地를 가진 農民만이 「요오맨」이라고 불리워지고 그것도 年 40s.의 收入을 올리는 自由保有地를 保有한다는 것이 要求되었다. 그리고 嚴密한 法律的 意味에서는 「年 40s.을 支出할 수 있는 自由保有農(freeholders)이 「요오맨」이라고

(1) 小松芳喬 「ヨーマン層衰滅の時期に關する語學說」 『早稻田政治經濟學雜誌』 第102號 23—24面 參照.

(2) M. Campbell, *The English Yeoman under Elizabeth and the Early Stuarts*, p. 8.

(3) *Ibid.*, p. 9.

(4) *The Institutes*, 11, 1671, p. 668, quot. by Campbell, *Ibid.*, p. 23.

불리워 졌다. 왜냐하면 이들만이 州代議士(knight of the shire)의 選舉權과 裁判所의 陪審員資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經濟적으로 富裕한 者도 自由保有農이 아닌 者는 이들의 地位에서 強力히 排除되고 있었다.⁽⁵⁾

그러나 農奴制의 解體와 함께 身分的 支配를 받고 있던 農民이 그 地位를 向上시키고 領主의 直營地(demesne)를 賃借한다든가 荒蕪地를 開墾함으로써 從前보다 富裕해짐에 따라 「요오맨」이라는 語句는 嚴密한 法律上的 意味에서 經濟적으로 한 階層을 意味하는 것으로 매우 曖昧하게 使用되게 되었다. 그래서 「요오맨」은 『農業關係에 關해서 말할 때에는 自由保有農이 아니라도 「젠틀맨」(gentleman) 層의 밑에 있는 모든 富裕한 農民』⁽⁶⁾이며 『젠틀맨』과 「코티저」(cottager) 또는 「페전트리」(peasantry)의 中間에 있는 「요오맨」層 또는 中産階級』⁽⁷⁾을 가리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요오맨」은 具體적으로 어떠한 農民層으로 構成되고 있었는가. 이 點에 關해서는 論者에 따라 見解에 差異가 있다. 「립슨」(E. Lipson)은 『「요오맨」은 自由保有農 以外에 贍本保有農(copyholders)과 定期借地農(leaseholders)도 包含되고 있었다』⁽⁸⁾라고 主張하고 「트레벨리안」(G.M. Trevelyan)은 「요오맨」은 現在 繁榮하고 있는 3階級 즉 『自身の 土地를 耕作하는 自由保有農, 地主의 恣意로 土地를 剝奪當하는 小作人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農業經營者, 그리고 多幸하게 固定地代와 安定된 借地權을 享受한 農民』을 包含하고 있었다고 主張해서⁽⁹⁾ 兩者는 같이 自由保有農 以外에 贍本保有農과 定期借地農을 「요오맨」層에 包含하고 있으며 「클라크」(S.G. Clark)도 같은 主張을 하고 있다.⁽¹⁰⁾

이에 對해서 日本의 戶谷氏は 「요오맨」이라는 語句가 14世紀에서 15世紀 中葉까지는 狹義로 『40s.의 收入이 있는 自由保有農』을 意味하고 있었으나 그後 부터는 農村의 富農層을 가리키는 廣義로 使用되었다는 事實을 明白히 하면서도 「요오맨」은 『一定한 歷史過程에서만이 生存할 수 있었던 特殊한 農民』이라고 理解하기 때문에 自作農一般을 「요오맨」

(5) R.H. Tawney, *The Agrarian Problem in the Sixteenth Century*, p. 28. 13世紀末에는 年 20s.의 收入을 가진 自由保有農은 自己가 居住하는 州의 陪審員이 될 수 있었고 年 40s.의 收入을 가진 自由保有農은 他州의 陪審員도 될 수 있었다. E.A. Kosminsky, *Studies in the Agrarian History of England in the Thirteenth Century*, Oxford, 1956, p. 257. 當時의 40s.은 「엘리자베드」朝 通貨의 £ 6에 相當했다.

(6) Tawney, *op. cit.*, p. 28.

(7) *History of King Henry VII* (Lumley), pp. 70—72, quot. by Tawney, *Ibid.*, p. 28.

(8) E. Lipson, *The Economic History of England*, Vol. II, London, 1948, p. 374.

(9) G.M. Trevelyan, *English Social History, A Survey of Six Centuries Chancer to Queen Victoria*, London, 1946, 『英國社會史』林健太郎譯 200—201面.

(10) S.G. Clark, *The Wealth of England from 1496 to 1760*, London, 1954, p. 14.

이라고 부르는 것은 語句의 誤用으로 생각한다』⁽¹¹⁾고 해서 다음과 같은 定義를 하고 있다. 『廣義의 「요오맨」이란 家族勞動에 主로 依據하면서 生活하고 「超過勞動」의 一部에 相當할 뿐인 固定된 貨幣地代를 從來부터 支拂하고 있는 富裕하고 自由로운 農民이다.』⁽¹²⁾ 이렇게 해서 氏는 「요오맨」에 固定地代를 支拂하는 自由保有農과 贍本保有農을 包含하면서 定期借地農은 이것을 除外하고 있는 것이다.⁽¹³⁾ 또 德增教授는 「요오맨」에 自由保有農과 贍本保有農을 包含하면서 『定期借地農은 비록 終身借地農일지라도 이것은 「요오맨」階層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妥當하지 않다.』⁽¹⁴⁾라고 明確히 主張하고, 小松教授는 定期借地農을 便宜上 「요오맨」에서 除外하고 있다.⁽¹⁵⁾

秦氏는 「요오맨」을 보다 狹義로 理解해서 『嚴密한 意味에서의 「요오맨」의 把握을 強調하고 贍本保有農의 上層을 그에 包含하고는 있으나 「요오맨」을 自由保有農에 依해서 理解하려고 하고 있다. 즉 氏는 「요오맨」을 規定해서 『그것은 農奴制下の 自由民과 農奴의 出身이다. 그래서 後者인 경우에는 農奴身分으로써의 Gerichtsherrschaft 또는 Leibherrschaft에서 解放되고 領主의 支配가 미치지 않은 土地를 分有하든가 또 漸次로 莊園의 直營地를 分割所有하게 된 自由保有農(傍點一引用者)이며……獨立的이고 自由로운 農民이다. 그래서 이 「요오맨」은 『年 40s⁽¹⁶⁾의 收入을 올리는 自己의 土地에서 生活하는 農民이다.』⁽¹⁷⁾라 하고 따라서 16世紀 以降 富裕해지는 「요오맨」은 매우 『資本家的』이 되어서 다 같이 「요오맨」이라는 語句로 불리워지고 있으나 그것은 本來의 「요오맨」은 아니라고 主張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적어도 15世紀 末葉에서 16世紀에 걸쳐서 「民富」가 形成됨에 따라 隸農으로 富農層이 形成되고 있으며 「요오맨」을 自由保有農만으로 一元的으로 理解한다는 것은 無理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 「요오맨」이 農村의 有力한 一階層으로서 特히 16世紀에 重要な

(11) 戶谷敏之著 『イギリス・ヨーマンの研究』 12面.

(12) 前掲書 38面. 氏는 「요오맨」의 要件을 다음과 같이 分說하고 있다. 『(1) 小獨立生産者이어서 資本家는 아니다. 그러나 小資本家임을 排除하지 않는다. (2) 獨立・自由롭다. 「超過勞動」의 一部만이 地代로서 徵發되기 때문이다. (3) 前身은 villani, liberi homines, sockemanni다. 固定地代는 그래서만이 存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 農民内部的 分化가 低微한 極 貧困한 階層에 對한 富裕한 階層으로서 成立한 것이며 分化가 進行하면 漸次 消滅할 運命을 가지고 있다.』 同書 38-39面.

(13) 前掲書 38面. 氏는 定期借地農을 「허즈번드맨」(husbandman)으로 보고 있으나 (同書 91面) 그것은 너무나 狹義로 보는 것이라 하겠다.

(14) 德增榮太郎 「ヨーマンの研究——その概念規定——」 『商學』 第35・6號.

(15) 小松芳喬著 『英國産業革命史』 再訂版 233-4面.

(16) £ 40라고 記述되고 있으나 40s.의 誤記가 아닐까.

(17) 秦玄龍著 『イギリス・ヨーマンの研究』 153面.

(18) 前掲書 154面.



地位를 차지하고 漸次 富裕化했다고 하면 16世紀에는『嚴密한 意味에서의 「요오맨」』보다도 훨씬 富裕한 多數의 「요오맨」이 存在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렇다고 그들이 「요오맨」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勿論 社會的 身分을 表示하는 階層으로서의 「요오맨」과 經濟的 階級으로서의 「요오맨」을 混同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는 後者の 意味에서 그것을 把握하려고 하는 것이나 「요오맨」의 本來의 意味가 一定한 經濟的 條件을 가진 社會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內容도 時代에 따라 變化해 갔다면 「40s.의 自由保有農」이라는 嚴密한 規定만으로는 적어도 16世紀 特히 그 後期の 「요오맨」의 實際의 存在形態를 理解하기에는 困難할 것이다. 事實 「엘리자베드」(Elizabeth) 朝의 「요오맨」에 關해서 「라우스」(A.L. Rowse) 氏가, 『「코크」(Coke)와 其他 法律家들은 「요오맨」의 身分에, 40s.의 自由保有農이라는 낮은 標準을 두고 있으나 이것은 經濟的인 것이어서 「요오맨」은 아직 「젠트리」(gentry)가 되지 않은 農民의 富裕層이며 때로는 「젠트리」보다도 富裕했다.』고 主張하면서 「요오맨」을 『一般的으로 100「에이커」以上の 耕地를 가진 農民』이라고 規定⁽¹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16世紀의 요오맨이 얼마나 富裕해지고 있는가를 알수 있는 것이다.

16世紀에 「요오맨」은 그속에 여러가지 階層의 農民을 包含하고 있었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富의 規模도 一律적으로 規定하는 것은 困難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考察로 보아 「요오맨」은 農村의 中產階級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즉 16世紀에서 「요오맨」은 『그 主關心이 土地와 農業利潤에 있었던 富裕한 農村의 中產階級』⁽²⁰⁾이 었다. 그래서 적어도 16世紀에, 「요오맨」은 長期間 低額의 固定된 貨幣地代를 支拂해온 自由保有農과 隸農에서 漸次 富裕해진 贍本保有農 그리고 一部の 定期借地農을 包含한 農村의 中產階級이었던 것이다.

「요오맨」은 16世紀 農村社會에서 매우 重要的한 地位를 차지한 階級이며 當時의 많은 著者들의 注目을 끌고 그 賞讚의 對象이 되었다. 「베이콘」(Bacon)은 「요오맨」을 英國國力의 基礎로 보아 이를 讚揚해서 『이것은 「프랑스」와 英國을 比較해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다. 이 兩國에서 英國은 領土와 人口가 훨씬 적으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恒常 優位를 維持해 왔다. 그것은 英國의 中產階級이 좋은 兵士가 되는데에 反해서 「프랑스」의 百姓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²¹⁾라고 말하고 이러한 中產階級의 成長을 꾀한 「헨리」 7世(Henry VII)의 遠大한 計劃에 感服하고 있다. 「풀러」(Fuller)는 「요오맨」을 『豊富와 貧困 사이의 適切한

(19) A.L. Rowse, *The England of Elizabeth*, London, 1951. p. 231.

(20) Campbell, *op. cit.*, p. 61.

(21) Rowse, *op. cit.*, p. 230.

地帶에서 生活하는 英國에 特有한 階層』⁽²²⁾이라고 말하고 더욱 자랑스럽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훌륭한 「요오맨」은 다음 世代에는 精鍊된 鑛石으로서의 「첸틀맨」이며 國王이 捺印할 때에는 가장 高尚한 印象을 줄 수 있는 것이다……「프랑스」와 「이탈리아」는 5와 1 사이에 눈이 없는 주사위와 같은 것이며 貴族과 百姓이 있을 뿐이다. 事實 獨逸에는 우리 「요오맨」과 같은 boors가 있기는 하나 少數의 舊家가 貴族을 獨占的으로 專有함으로써 그들의 「요오맨」은 自己의 家門을 좋게 할 수 있도록 地位를 높이지는 못했다. 英國에서는 名譽의 殿堂은 美德의 殿堂을 通過한 者에게는 누구에게나 開放되고 있었다.……「요오맨」은 手織羅紗의 衣服을 입고 있으나 黃金으로 支拂을 하고 錫단추를 달고 호주머니에는 銀을 넣는다. 그는 外國人이 舊來의 英國의 慣習을 推測할 때 가장 確實한 標識이다. 즉 「첸트리」는 外國의 流行에 따르기 쉽기 때문이다.』⁽²³⁾

16世紀의 「요오맨」에 關해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은 「플러」만이 아니라 이밖에도 더욱 追加할 수 있다.⁽²⁴⁾ 어떻게 以上에 依해서도 特히 16世紀 後半期 「엘리자베드」朝의 農村社會에서 「요오맨」은 가장 重要한 地位에 있었고 經濟的으로 富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 16世紀 農村에서 中産階級으로서의 英國 「요오맨」의 樣相은 如實히 表示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요오맨」은 어떠한 歷史過程에서 成立되었던가.

(22) *Ibid.*, p. 230.

(23) 「플러」는 繼續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집에서는 異鄉人이라든가 貧者에게 아낌 없이 베풀다……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요오맨」의 食卓에는 많은 料理가 있어서……실속 있는 實質的인 食物이다.』 『그는 州代議士를 選出할 때에는 훌륭한 手腕을 發揮한다. 그는 租稅簿에는 한줄 全部를 차지하고 自己의 호주머니의 걱정은 하지도 않고 割當된 것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支拂하므로 國家의 醫師가 患告했다.』 『地方에서 그는 陪審員中에서 主要한 地位에 있는 사람이다.』 『飢饉時에는 그는 地方의 「요셉」(Joseph)이며 貧者를 飢饉에서 救해주며……自己의 貧困한 隣人에게는 市場의 高價格을 若干 에누리 해 준다. 近隣의 「첸트리」는 그에게 交際를 請한다. 그는 이것을 謙遜히 辭退하든가 또는 만가이 받아 들어거나 하지만 決코 無條件 바라지는 않는다.』 『戰爭에서 그는 徒步로 進軍하지마는 그는 높은 意氣에 타고 누구에도 隸屬하지 않고 自己의 國王에만 服從한다. 潔白과 獨立은 武勇心을 만드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勇敢하기 위해서는 自己가 支持해야 할 命을 求해야 한다. 따라서 萬若 國家가 모든 사람들을 貴族과 「첸틀맨」으로 해버리면 「허즈번드맨」은 單純한 勞動者나 「코티저」(cottager) (이것은 「집 있는 거지」라고 불리워 진다) 임에 不過하므로 國家는 優秀한 騎兵을 가질런지는 모르나 決코 優秀한 步兵隊를 가지지는 못할 것이다.……따라서 優秀한 步兵을 만들기 위해서는 國家는 奴隸의 또는 貧窮한 環境에서가 아니라 어느程度 自由롭고 裕福한 環境에서 자란 사람들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Fuller, *Holly and Profane State*, quot. by Tawney, *op. cit.*, pp. 35-37. 『이 最後의 節은 明白히 「베이콘」의 「헬러七世史」에서 배껴 것이다.』라고 「토오니」는 말하고 있다. Tawney, *Ibid.*, p. 35, Note 2.

(24) Thomas Smith, *De Republica Anglorum*, edited by Alston, Chapter 23, "Of Yeoman"; Tawney, *op. cit.*, p. 17, pp. 34-35.

Ⅲ. 農民保有地の 分化和 「요오맨」層의 成立

中世 英國農村에서 漸次的으로 進行한 貨幣經濟의 普及과 그結果 13世紀 後半에서 14世紀에 걸쳐서 廣範하게 나타난 賦役의 金納化(commutation)에 依해서 領主經濟는 이미 그 直營地耕作을 隸農의 賦役으로가 아니라 自由로운 農業勞動者⁽¹⁾의 雇傭으로 行하게 되었다. 그러나 14世紀 中葉에 全 「잉글랜드」에 蔓延한 大黑死病의 流行은 人口의 3分の 1 또는 2分の 1을 消失시켰고⁽²⁾ 그 結果 勞動力의 激減으로 말미암아 雇傭勞動力으로 直營地를 耕作한다는 것도 事實上 不可能하게 되었다. 즉 貨金은 從前보다 50%나 上昇하고 領主經濟의 窮乏과 함께 直營地耕作은 別써 利潤을 올릴 수 있는 企業은 아니었다. 거기서 領主는 그 收入을 直營地耕作에서가 아니라 直營地를 農民에 貸與해서 얻는 地代에서 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勿論 直營地의 貸與가 반드시 이 時期에 始作된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形態의 土地貸與는 13世紀 農村에서도 「普通으로」 行해졌으며 「에드워드」一世(Edward I) 治世의 初期부터 貨幣地代로서 短期의 直營地貸與와 農民相互間의 土地貸與가 많이 行해지고 있었다.⁽³⁾ 그러나 이러한 早期의 土地貸出은 小規模였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直營地耕作에 큰 變化를 招來할 程度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4世紀 中葉 以後는 直營地貸與傾向이 더욱 促進되었고⁽⁴⁾ 直營地만이 아니라 麥로는 種子와 家畜까지 包含한 “stock and land lease”에 依해서 直營地를 貸與하게 되었다.⁽⁵⁾ 『直營地를 貸與하는 慣例가 採用되었을 때 隸農의 土地保有農으로 人格의 賦役을 要求할 必要는 없어지고——當然한 事實로서 賦役

(1) 勞動者는 主로 「코티저」와 解放된 隸農으로 構成되고 있었다.

E. Lipson, *The Economic History of England*, Vol. I, London, 1949, pp. 92-93.

(2) F.A. Gasquet, *The Black Death*, London, 1908, p. 225, quot. by Lipson, *Ibid.*, p. 104.

(3) 例를 들면 各各 1, 1.5, 2, 3 「에이커」이며 또 가끔 1 「에이커」未滿의 것이었다. 따라서 土地讓渡도 많아졌다. E.A. Kosminsky, *Studies in the Agrarian History of England in the Thirteenth Century*, Oxford, 1956, pp. 211-2. 이것은 아직 微弱하기는 하나 13世紀의 農民分화에 큰 影響을 주었을 것이다.

(4) 그것은 下表에 依해서도 推察된다.

賦役의 程度 調査年度	賦役의 程度			
	完全히 廢止된	少量의 賦役이 賦課된	勞働의 1/2이 賦課된	全勞動力이 賦役으로 賦課된
1350年	6	9	22	44(54%)
1380年	40	39	25	22(17%)

(數字는 「매너」數)

Lipson, *op. cit.*, pp. 95-97에서 作成.

(5) *Ibid.*, p. 119.

의 金納化가 이루어졌다. 그 以降 直營地는 農民保有地가 그 周圍에 經濟的 從屬의 狀態로 散在하는 核心임이 끝났던 것이다.」⁽⁶⁾

直營地의 貸出例를 具體的으로 보면 14 世紀 前半期까지는 普通 數「에이커」乃至 數十「에이커」씩 小地片으로 貸與되고⁽⁷⁾ 있었는데 對해서 15 世紀에 들어오면 보다 大規模로 가끔 一括해서 少數의 農民에게 貸與되는 例가 많아지고 있다.⁽⁸⁾ 이러한 直營地의 借地는 그 保有地가 다른 保有地보다 훨씬 크고 自由保有 贍本保有 또는 任意保有(tenancy at will)와 달라서 數年期間의 定期借地保有며 그것이 普通의 小作과 區別되는 것은 그 地代가 現物 地代였다는 데에 있었다⁽⁹⁾

直營地의 貸與를 「레스터」(Leicester) 修道院에 關해서 보면 早期와 後期와의 貸與規模의 相異가 明白하다. 여기서는 1341 年 以前에는 直營地貸與는 小規模로 行해지고 그것은 直營地의 一部를 多數의 小規模의 그리고 求久的인 小作農地片으로 移行하는 것이었다.⁽¹⁰⁾ 例를들면 「더머스톤·매너」(Thurmaston manor)에서는 1341 年 以前에 87.5「에이커」의 直營地가 있었으나 그 經營이 不利해진 結果 採草地를 除外하고는 12 人의 農民에게 모두 貸出되었으며 「웨스트스톤」(Weststone)에서는 1341 年에 3「버어기트」(virgate)의 直營地와 1「토포트」(toft)의 敎會土地가 小地片으로 貸與되었고 또 「스토우튼」(Stoughton)에서는 隸農地外에 *terram de novo arentatem* 이라고 일컬어지는 8 個의 定期借地가 있었는데 이것은 1341 年에 直營地가 貸與된 것이다.⁽¹¹⁾

15 世紀 後半期에는 直營地의 分割貸與는 一括해서 (*en bloc*) 한 사람의 借地農에 貸與되고 있다. 1477 年의 直營地에 關한 史料는 耕地 採草地 放牧地 果樹園 鳩舍가 한 借地農에 依해서 利用되고 있는 例를 提供해주고 있으며 直營地와 함께 10 分の 1 稅까지도 貸與되었다.⁽¹²⁾

이러한 過程에서 農民은 直營地를 賃借해서 自己의 保有地에 附加함으로써 保有地를 擴大시키고 漸次 經濟的 地位를 向上시킬 수 있게 되었다. 事實 勞動者의 激減에 依한 賃金

(6) *Ibid.*, p. 120.

(7) R.H. Tawney, *The Agrarian Problem in the Sixteenth Century*, p. 94.

(8) 例를 들면 「엠프레스베리」(Ambresbury)서는 1436 年에 2「카르케이트」의 耕地가 8「에이커」의 採草地와 400「에이커」의 放牧地와 함께 數年の 期限附로 여러 小作農에게 貸與되고 있으며 같은 例는 「윈터본」(Winterborne)에서도 볼 수 있다. Tawney, *op. cit.*, p. 94.

(9) Lipson, *op. cit.*, p. 120.

(10) R.H. Hilt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Some Leicestershire Estates in the 14th & 15th Centuries*, London, 1947, p. 88.

(11) *Ibid.*, pp. 89-90.

(12) *Ibid.*, pp. 91-92.

上昇과 土地의 豊富에 依한 地代低下는 勞動者와 農民의 地位改善에 크게 貢獻하였다. 『15世紀의 不況』도 領主經濟에 對한 危機기는 했으나 農民에게는 一種의 「黃金時代」(J.E. Thorold Ragers)였던 것이다.⁽¹³⁾ 그러나 일찍부터 直營地를 賃借할 수 있는 者는 經濟적으로 다른 農民보다도 어느 程度 이미 優位에 있었던 者이며 또 直營地를 一括해서 賃借한 者는 農民의 上層部였던 것이다. 그러한 富裕한 農民層은 어떻게 해서 形成되었던 것인가. 基本的으로는 賦役金納化의 進行은 農民에게 若干의 剩餘를 發生시키고 貨幣經濟의 農村에의 浸透는 「社會的 分業」과 「局地的 市場」의 發生과 함께 農民間에 存在하고있던 原則的 平等을 攪亂하고 어떤 農民으로 하여금 다른 農民보다도 더 큰 經濟的 地位改善의 機會를 가지게 했던 것이다.

이點에 關해서 「비노그라도프」(P. Vinogradoff)는 賦役金納化의 社會的 結果로서 13世紀의 農村에 本來의 自由農인 socmen 以外에 隸農에 그 起源이 있는 mol-men 이라는 社會層의 出現에 注目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賦役金納化의 影響은 그 自身이 自由農과 隸農과의 中間에 있으나 그 어느 階級에도 適合하지 않은 社會層의 數的增加를 感知시켰다. 「매너」當局은 가끔 mol-land 라든가 mol-men 에 言及하고 있다.』⁽¹⁴⁾ 그리고 mol-land 라든가 mol-men 이라는 語句는 「封建時代에는 普通 一定한 地代를 支拂할 條件으로 領主에 依해서 그들의 大部分의 賦役에서 解放된 隸農에게 使用되었다. 公式解放이 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法的으로 그들은 隸農의 地位에 남아있어야 했으나 經濟的 變化는 그들의 地位에 反作用을 주었으며 莊園諸文書는 이 全階級이 어떻게 그 重要性을 漸次 增大시키고 있는가를 明示하고 있다.』⁽¹⁵⁾ 이러한 mol-men 은 隸農이 週賦役을 支拂하는데 對해서 貨幣地代를 支拂하고 있으며 socmen 에 分類되고 있다. 이 事實은 隸農은 享受치 못한 土地保有와 賦役의 確定性을 意味하고⁽¹⁶⁾ 그러한 者들이 socmen 과 함께 自由保有農을 構成하게 된 것이다.

어떻든 隸農에서 自由農에 近似한 그러한 中間的 階層이 出現하고 있다는 것은 일찍부터 農民間에 自己의 經濟的 地位를 改善할 수 있는 要因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明白히 모든 同一性을 가진 「매너」의 構成員들은 처음부터 相當한 財產을 만드는 데에는 他人보다도 有利한 地位에 있는 사람들을 包含하고』⁽¹⁷⁾ 있었으며 그들이

(13) M. Postan, "The Fifteenth Century; Revisions in Economic History, ix," *The Economic History Review*, ix, 2, May, 1939 參照.

(14) P. Vinogradoff, *Villainage in England*. London, 1927, p. 183.

(15) *Ibid.*, p. 184.

(16) *Ibid.*, p. 186.

(17) Tawney, *op. cit.*, p. 82.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自己의 利益을 改善하고 보다 많은 富를 自己財産에 附加한다는 것은 當然한 것이라 하겠다. 이점에 關해서 「코스민스키」(E.A. Kosminsky)는 農民層에 생긴 斷層을 모두 商品과 貨幣關係의 發達 그리고 「매너」(manor)의 崩壞에만 歸因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指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農民이 分化한 깊은 原因은 前封建的인 土地가 個個의 家族所有에 分化한때에 까지 遡及해서 存在한 것이다.』⁽¹⁸⁾ 隸農保有地의 配分은 그 家族數가 아니라 世帯에 關聯되고 있는 것이며 그 負擔도 保有地에 賦課되었다. 따라서 少數家族을 가진 農民이 그 勞動力의 大部分을 領主에 提供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對해서 家族이 많은 農民은 그 剩餘勞動力을 自己의 生産物增大에 利用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것이 「典型的」 隸屬保有地에서 貧富의 差를 發生시키게 한 하나의 原因인 것이다. 또 「매너」의 行政制度도 다른 面에서 農民層의 分化를 促進시켰다. 즉 執事라든가 莊司와 같은 「매너」 官僚는 名目的 地代만을 支拂하는 土地를 讓渡받고 또 그 官職을 自己의 富裕化에 利用한 것이다. 「매너」 制度는 어느程度 外的인 平等을 維持했으나 早期에 始作된 農民保有地의 賣買와 貸與의 進履을 有效하게 阻止하지는 못했다.⁽¹⁹⁾

그러한 農民들은 自己의 有利한 立場을 利用해서 일찍부터 土地의 購買 開墾 그리고 直營地의 賃借에 依해서 그 保有地를 增大시키고 隣人보다도 많은 土地를 가진 富裕한 農民層을 形成하게 되었던 것이다.

먼저 土地의 賣買에 關해서 보자. 가장 端初的인 土地市場은 農民이 그가 屬하고 있는 「매너」를 떠나거나 또는 相續人이 없을때에 나타났으며 이들의 保有地는 「매너」 裁判所에서 保有자가 바뀌게 되었다. 例를들면 「인골드스멜」(Ingoldsmell)에서는 1315年과 1316年의 相續裁判에서 6件의 賣買가 나타나고 있으며 「크론달」(Cron dall) 「매너」에서는 1282年에 한 小作農이 自己이 保有地를 斷念하고 있다.⁽²⁰⁾ 또 小作農이 富農으로부터 再賃借도 하고 있다. 1351年에 「서튼」(Sutton) 「매너」 「햄프셔」(Hampshire) 所在]서는 多數의 小作農이 보다 큰 慣習小作農으로 土地를 賃借하고 있으며 「크로크햄」(Crokeham) 「매너」서는 1287年에 이미 같은 例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土地의 再貸與가 相當히 行해졌으며 그 結果 16世紀 中葉이 되어도 그런 例가 多數 存在하게 되었다.⁽²¹⁾

富裕한 農民層을 形成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農民間의 小地片의 賣買以外에 農民이 「매너」의 許可를 받아서 行한 荒蕪地의 開墾도 影響을 주었다. 事實 13世紀에는 農業이

(18) Kosminsky, *op. cit.*, p. 207.

(19) *Ibid.*, pp. 207—8; Tawney, *op. cit.*, pp. 82—3. 農民經濟에 不平等이 생긴 原因으로서 「토오니」는 또 保有地의 平等한 分配도 例外的으로 肥沃한 土地의 保有자가 貧土의 保有者보다도 有利한 立場에 있었다고 指摘하고 있다. Tawney, *op. cit.*, p. 82.

(20) *Ibid.*, p. 79.

(21) *Ibid.*, pp. 80—81.

크게 發展해서 人口增加와 함께 開墾이 크게 이루어진 時代였다.⁽²²⁾ 그래서 「에이털리」(Yateleigh)에서는 1287년에 53명의 慣習小作農이 37「에이커」의 荒蕪地를 開墾해서 保有地에 附加하고 있으며 開墾地 以外에는 全히 土地가 없는 者도 있었다. 같은 莊園의 「앨더쇼트」(Aldershot) 10分の 1 稅區서 한 小作農이 52「에이커」의 開墾地를 保有하고 「크로크햄」(Crokeham)에서는 2分の 1「버기트」의 保有地에 63.5「에이커」의 開墾地를 가지고 있으며 또 「사우드우드」(Southwood)에서는 16「에이커」의 開墾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²³⁾

이들 農民保有地의 增大過程은 營利主義의 發達과 그의 農業에의 反作用에 依해서 보다 큰 土地市場의 成立을 促進시켰다. 事實 「20 乃至 30「에이커」의 中間規模의 保有地를 가진 同質의 階層에서 少數의 大農保有地의 出現은 매우 自由로운 土地市場에 依해서 비로소 이루어졌던」⁽²⁴⁾ 것이며, 거기에는 이미 土地投機의 全機構——販賣人 仲介人 顧客——가 完備되고 있었던 것이다.⁽²⁵⁾

「힐튼」(R.H. Hilton)은 이러한 土地市場의 成立은 「레스터」修道院 所領에는 裁判所 記錄이 없어 發見할 수 없으나 競爭地代에서 그것을 發見할 수가 있으며 또 그端初는 「게린」(Geryn) 地代帳에 있는 領主의 「任意」(ad placitum)에 依한 地代에서 發見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들 地代는 領主의 意思 또는 嗜好에 依해서 決定되는 地代며……慣習의 隸屬土地保有보다도 領主의 意思에 더 크게 依存하는 地代다. 慣習으로 保護되지 않은 任意土地所有는 本質적으로 그 諸條件이 市場狀態 즉 土地需要와 地代 또는 土地自體에 對한 領主의 必要와의 均衡에 依存하고 있는 土地保有다.』⁽²⁶⁾ 領主는 가장 有利한 條件으로 土地를 貸與하려고 하고 따라서 이것을 賃借할 수 있는 者는 平均 以上の 土地를 保有하고 있는 富裕한 農民層이었다고 생각된다. 土地市場이 成立한 結果 發生한 保有地의 分化와 土地의 再編成⁽²⁷⁾은 農民層의 分化를 招來하고 한편에서는 富裕한 農民層이 「正常的」 保有地面積인 20 乃至 30「에이커」 以上の 土地를 獲得하고 있는데 他面에서는 貧農層은 그 保有地를 消失해서 勞動者로 轉落하게 되었던 것이다.

(22) T.A.M. Bishop, "Assarting and the Growth of the Open Fields," *The Economic History Review*, VI, 1. (1935) : E.M. Carus-Wilson (ed.) *Essays in Economic History*, London, 1955, pp. 26—40.

(23) Tawney, *op. cit.*, p. 88.

(24) Hilton, *op. cit.*, p. 95.

(25) Tawney, *op. cit.*, p. 81.

(26) Hilton, *op. cit.*, p. 95.

(27) 保有地의 再分割과 小土地의 賣買는 「레스터」修道院의 土地臺帳에서 볼 수 있다. 즉 「브롬킨도프」(Bromkynsthorpe)에서는 한 사람이 保有하고 있는 約 31「에이커」의 土地가 10名의 小作農에 分割되었고 또 그것은 8名의 새로운 借地農들 사이에서 再編成되었다. Hilton, *op. cit.*, pp. 99—100.

「民富」의 形成과 함께 15世紀에서 16世紀에 걸쳐서 이러한 農民層의 分化는 廣範히 進行하여 中世農民의 所謂「標準의인 保有地面積」은 若干의 地方的例外를 除外하면 거의 못 보게 되었다. 土地市場의 成立과 農民層의 分化가 當時의 農民에 依해서도 明確히 認識되고 있었다는 것은 한 農民의 다음과 같은 陳述로 알 수 있다. 『祖父의 時代에는 普通 A B C D에 屬하고 있던 「버기트」가 지금은 A에만 屬하게 되었습니다. 各各 한 保有地를 保有하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은 2乃至 3의 保有地를 占有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土地를 못사서 賃借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者는 너무나 많은 土地를 샀기 때문에 그들은 그 保有地의 一部를 다른 사람에 再貸與했습니다. 事實 「버기트」 또는 2分の 1 「버기트」를 論하는 것은 尠히 意味가 없어진 것입니다.……지금은 舊名은 土地保有家族에 의 證據는 안됩니다. 「프랭클링」(Frankling)은 「듀런트」(Durrant), 「귄터」(Gunter), 「블레이크」(Blake)의 土地를 購入하고 「바이즈」(Vites)는 「패리」(Parry)의 土地를 購入하고 他面 「피놀」(Pynole), 「포프」(Pope), 「호킨즈」(Hawkins) 그리고 「블레이크」(Blake)의 殘餘의 保有地는 모두 「블랙웰」(Blackwell)의 손에 移轉되어 버렸던 것입니다.』⁽²⁸⁾ 한 農民의 陳述에 나타난 이러한 事情은 廣範한 地域에 걸쳐서 事實에 依해서 確認된다. 즉 「스토튼」(Stoughton) 「매너」에서는 14世紀 中葉에 約 66「에이커」의 隸農保有地가 26名의 小作農에 依해서 거의 平等하게 保有되고 있었으나 15世紀 後期에는 以前에 存在했던 土地保有의 平等性은 없어져서 分化되고 있으며 自由保有地에서도 같은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²⁹⁾ 같은 現象은 「서리」(Surrey)의 「몰든」(Malden) 「매너」와 「아스플리·기즈」(Aspley Guise)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³⁰⁾ 「윌트셔」(Wiltshire)의 「사우드·뉴턴」(South Newton) 「매너」서는 1315년에 7名의 小作農이 各各 23「에이커」(1「버기트」), 17名이 各各 12「에이커」(1/2「버기트」)를 保有하고 其他 8名의 「코티저」(cottagers)가 있었으나 1567년에는 殘存하는 10名의 贖本保有農에서 從前과 같이 「버기트」를 가진 者는 1名에 不過하고 其他는 各各 59, 65, 80, 96「에이커」 또는 15, 7, 3「에이커」를 保有하고 있어 初期의 均一的編成은 消滅해 버렸다.⁽³¹⁾ 이러한 例는 이들 以外에도 얼마든지 列擧할 수 있는 것이며⁽³²⁾ 그것은 保有地의 分化와 農民層의 兩極分化를 뚜렷하게 表示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過程에서 15世紀 後半에서 16世紀에 걸쳐 『1341年 以前의 最大의 農民保有地面積인 30「에이커」를 훨씬 넘어서 60~80「에이커」의 土地를 耕作할 수 있는 階層』인 富裕農

(28) Tawney, *op. cit.*, pp. 59—60.

(29) Hilton, *op. cit.*, pp. 100—101.

(30) Tawney, *op. cit.*, pp. 68. 74; Lipson, *op. cit.*, pp. 133—4.

(31) Tawney, *op. cit.*, p. 73.

(32) *Ibid.*, pp. 66—69, 74.

民層이 成立하게 되었던 것이며 慣習的 土地保有의 崩壞와 土地市場의 發達은 그의 前提 條件이었던 것이다.⁽³³⁾ 이들 富裕한 農民層을 「토오니」는 「小人島의 資本家」(Lilliputian capitalists)라고 부르고 그 意義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莊園組織內에서의 變化는」 첫째 慣習小作農들 사이에서 小規模의 資本家 더욱 16世紀의 大借地農과 早期의 農業組織 과의 사이에 中間環을 이루는 사람들의 出現을 意味한다. 「그것은」 相當한 面積의 保有地가 成功的으로 經營될 수 있다는 證據이며 直營地의 借地農은 가끔 그들에서 輩出되고 있다. 둘째 相異한 小作農들 사이에 나타난 不平等은 慣習的 農業方法의 變革이 全小作農이 明確히 規定된 階級에 組織되고 있었던 때 보다도 이루어지기 쉬운 狀態의 增大를 意味한다. 貧農이 아직 自給目的의 農業을 營爲하고 있는데 富農은 相當한 規模로 市場目的의 生産을 해서 「더욱 富裕해 진다.」⁽³⁴⁾ 農民間의 不平等은 各 農民의 經濟的 條件의 相異에 依해서 增大되고 그것은 農民分化를 더욱 促進시켰던 것이다.

中世農村에서도 같은 自由保有農의 經濟的 地位에는 相當한 差異가 있었다는 것은 「코스민스키」의 研究에 依해서 알 수 있으나⁽³⁵⁾ 그럼에도 不拘하고 慣習保有農은 어느 程度의 差異가 있다해도 均一의 原則에서 土地를 保有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6世紀에는 그 均一性은 「옛날의 痕跡」에 不過하게 되고 廣範히 分化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表⁽³⁶⁾는 慣習小作農의 階層分化의 程度와 그 地方的 差異를 例示하고 있다. 이 表에 의해서 商業的 影響이 적고 經濟的 後進地域인 北部地方(Northumberland)에서는 16世紀에도 慣習保有地의 均等性이 뚜렷하고 「매너」에 따라 若干의 差異는 있으나 39~45「에이커」의 標準의 面積의 土地가 그대로 殘存하고 있는데 對해서 일찍부터 商工業이 發達한 南東部地方(Suffolk, Norfolk, Wiltshire)에서는 이미 廣範한 分化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全「매너」를 總括해 보면 30~50「에이커」를 保有하는 農民은 土地없는 「코티저」(cottagers)를 除外해서 全人口의 約 2分の 1(49.1%)를 차지하고 이에 對應하는 農民은 「노덤벌랜드」(Northumberland)에서는 全人口의 3分の 2, 「이스트·앵그리어」(East Angria), 「랭커셔」(Lancashire), 「스태포드셔」(Staffordshire)에서는 3分の 2 以下, 南部와 中部 諸州地方의 9個「매너」에서는 約 2分の 1, 그리고 「윌트셔」(Wiltshire)에서는 3分の 1을 各各 차지하고 있다. 大保有農과 小保有農은 南東部地方에 많고 「랭커셔」와 「노덤벌

(33) Hilton, *op. cit.*, p. 105.

(34) Tawney, *op. cit.*, p. 137.

(35) 13世紀의 自由保有農의 保有地面積의 相異에 關해서는 Kosminsky, *op. cit.*, p. 223, Table II 參照. 自由保有地는 그 面積에 關한限 隸農保有地보다도 훨씬 多樣해서 1~1/2「버기트」의 典型的 農民保有地는 全隸農保有地의 60%에 達하는데 自由保有地의 33%에 不過했다. *Ibid.*, p. 253.

(36) Tawney, *op. cit.*, pp. 64—65.

第1表 慣習小作農의 保有地面積

總計	保有地面積 (英畝)										
	英國 南部	Somersetshire, 1	Wiltshire, 7	Gloucestershire, 1	Norfolk, 8	Suffolk, 5	Leicestershire, 3	Northamptonshire, 2	Staffordshire, 3	Lancashire, 4	Northumberland, 10
1664	366	156	391	129	255	103	168	96	小作農總數		
167	23	3	52	13	30	8	38	...	土地를 안가진 小屋 또는 家屋		
255	58	5	77	17	53	21	14	10	2.5에이커 以下		
140	27	7	40	6	24	16	19	1	2.5-5		
206	52	12	69	6	22	14	29	2	5-10		
137	29	8	28	8	22	6	35	1	10-15		
100	31	7	26	3	13	10	7	3	15-20		
103	16	27	19	3	22	11	4	1	20-25		
84	22	16	14	5	5	3	7	12	25-30		
77	12	14	5	1	10	1	7	27	30-35		
60	11	10	9	10	3	2	2	13	35-40		
52	10	12	4	7	7	2	...	10	40-45		
42	13	5	2	8	2	2	...	10	45-50		
28	3	7	4	7	5	2	50-55		
26	6	2	7	7	...	2	2	...	55-60		
29	7	4	3	6	7	1	...	1	60-65		
18	6	3	3	2	2	1	...	1	65-70		
17	3	4	1	4	2	...	1	2	70-75		
11	5	1	1	1	2	1	75-80		
11	4	2	1	2	2	80-85		
8	4	1	1	1	1	85-90		
2	1	1	90-95		
7	2	2	1	2	95-100		
4	4	100-105		
4	2	...	2	105-110		
2	1	...	1	110-115		
1	1	115-120		
18	7	...	4	1	4	1	1	...	120 以上		
55	9	4	17	7	14	2	2	...	未詳		

R.H. Tawney, *The Agrarian Problem in the Sixteenth Century*, pp. 64-5, Table IV.

랜드]에서는 「코티저」를 除外하고 50「에이커」를 保有하는자가 4.4%인데 對해서 「서포크」와 「노포크」에서는 8.5%며 「윌트셔」에서는 16.9%, 其他 9個「매너」서는 14%이다.

이렇게 해서 16世紀의 農民은 社會的으로는 아직 平等했었다 해도⁽³⁷⁾ 經濟的으로는 尙히 不平等했다. 「레스터셔」(Leicestershire)의 農民을 보면 헨리 8世(Henry VIII) 治下에 地主階級을 除外해도 農村人口의 4%가 動産의 4分の 1을 所有하고 있으며 15%가 그의 2分の 1을 所有하고 있다. 土地의 配分은 더 不平等해서 平均 30~35「에이커」를 保有하는 多數의 小農民이 窮乏線上에서 生活하고 있는데 對해서 不過 4%가 100「에이커」以上을 가진 「요오맨」이며 下層에는 1~15「에이커」를 가진 「코티저」와 農業勞働者가 있었던 것이다.⁽³⁸⁾

以上 우리는 적어도 原則的으로는 齊一性의 原理위에서 있던 共同體的 組織으로 出現하는 富裕한 農民層의 成立過程을 分析했다. 이에 依해서 「平均的인 保有地面積」보다도 훨씬 큰 土地를 保有하는 富農層이 形成되는 것을 어느 程度 明白하게 看取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16世紀에 사람들이 언제나 「자랑」을 가지고 讚揚하고 「國家의 支柱」 그리고 「特殊 英國의 階層」으로서 16世紀의 英國農村社會를 特徵지우는 「요오맨」이었다. 그들 「요오맨」은 長期間 低額의 貨幣地代를 支拂하고 일찍부터 가장 有利한 地位改善條件을 가지고 着實히 上昇한 自由保有農과 「매너」의 解體過程에서 自己의 地位를 向上시킨 贖本保有農과 定期借地農을 包含하고 있었다. 「립슨」의 말을 빌리면 『到處에서 所有者의 손으로 移動한 土地의 耕作과 直營地의 解體는 多數의 廣範한 小農民의 土地所有者階級과 借地農階級——英國의 「요오맨」——에의 길을 열었던 것』⁽³⁹⁾이며 그러한 過程에서 「요오맨」은 形成되었던 것이다.

IV. 「요오맨」의 富裕化過程

1. 土地保有形態와 經濟的諸負擔의 問題

「매너」制度의 崩壞過程에서 「조금씩」 土地를 獲得하면서 漸次 富裕해진 「요오맨」은 16

(37) 例를 들면 이 時期에 地主의 子弟는 「요오맨」과 「히즈번드맨」의 子弟와 같이 村落의 學校에 다니고 있었다. W. G. Hoskins, *Essays in Leicestershire History*, Liverpool, 1950, p. 127, note 1.; A.L. Rowse, *The England of Elizabeth*, London, 1951, p. 227; Tawney, *op. cit.*, pp. 134—135.

(38) Hoskins, *op. cit.*, p. 130; Rowse, *op. cit.*, p. 225.

(39) Lipson, *op. cit.*, p. 121.

世紀에는 『『그들의』 先祖가 일찌기 가져보지 못한 많은 財産과 信用과 名聲을 가지게』⁽¹⁾ 되었으며 農村의 가장 堅實한 階層이 되었다. 그러면 그들이 享有하고있던 土地保有條件은 如何한 것이었던가? 다음에 우리는 이 問題를 考察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問題가 「요오맨」의 地位를 考察할 때 決定的인 要素였기 때문이다.⁽²⁾

「요오맨」의 土地保有의 法的性格을 보면 그들은 여러가지 形態의 土地保有를 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同一 「요오맨」이 「매너」에 따라서 그 保有形態가 相異하였다. 그 數에 있어 有서와 같이 土地保有形態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地方的 偏差를 가지면서 서로 結合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自由保有農이 많은 「서섹스」(Sussex)의 「후」(Hoo 「매너」)서는 77名의 自由保有農이 있었으나 贍本保有農은 없고⁽³⁾ 이에 對해서 贍本保有農이 많은 北部地方에서는 大部分의 「요오맨」이 贍本保有農이 었다⁽⁴⁾ 또 「요오맨」이 自由保有地와 贍本保有地를 同時에 가지고 있는 例도 있다. 「서포크」(Suffolk)의 한 「요오맨」은 4個「매너」에 自由保有地와 贍本保有地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例는 「워릭셔」(Warwickshire)와 「데번셔」(Devonskire)의 「요오맨」에 關해서도 볼 수 있다.⁽⁵⁾ 自由保有와 贍本保有의 두가지 保有形態 以外에 「요오맨」이 定期借地에 依해서 一定期間 土地를 保有하고 있었다는 事實은 가끔 引用되는 「레티머」(Hugh Latimer)의 『나의 父親은 「요오맨」이며 自己自身の 土地는 가지고 있지 않았읍니다.』라는 말에 依해서도 明白할 것이다. 後述하는 「레스터셔」의 「브래지트」(Thomas Bradgate)라든가 「험버스톤」(Thomas Humberstone)과 같은 「요오맨」도 自己가 本來 가지고 있던 土地보다도 많은 土地를 宗教機關과 地主로부터 定期借地하고 있었던 것이다.⁽⁶⁾

이렇게 해서 「요오맨」은 自由保有 贍本保有 그리고 定期借地保有의 諸形態의 土地를 保有하고 있었다. 한편 「매너」 諸文書에 依해서 16世紀 農民의 土地保有의 性格을 보면 農村의 人口構成은 大體的으로 自由保有農 慣習小作農 그리고 定期借地農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第2表⁽⁷⁾는 이들의 統計的 比率를 提示한다.

이 表에 依해서 同一階層의 數的 構成이 地方에 따라서 큰 偏差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나 全體的으로 보면 慣習 小作農은 全土地保有人口의 3分の 2(61.1%)로서 가

(1) *Furse Family Book*, p. 170. quot. by M. Campbell, *op. cit.*, p. 70.

(2) Campbell, *op. cit.*, pp. 105—106.

(3) *Ibid.*, p. 119.

(4) 例를 들면 贍本保有農이 壓倒的으로 많은 「랭커셔」의 「프레스코트」(Prescott) 「매너」에서는 1619년에 小作農. 48名中에서 적어도 34名이 「요오맨」이 었으나 그들의 土地는 모두 贍本保有地였다. Campbell, *op. cit.*, p. 119.

(5) *Ibid.*, p. 119.

(6) W.G. Hoskins, *Essays in Leicestershire History*, pp. 130—131.

(7) 이 表는 「토오니」가 118個「매너」의 調査簿와 地代帳으로 作成한 것이다.

第 2 表 16 世 紀 의 土 地 保 有 農 民

州 名 (數字은 「매너」數)	計	自由保有農	慣習小作農	定期借地農	不 備 實
「노던벌랜드」 Northumberland, 6	474	26	436	12	...
「랭커셔」 Lancashire 7 과 「코커샌드」 Cockersand 修道院土地	1,280	217	451	332	278
計	1,754	243 (13.8%)	887 (50.5%)	346 (19.04%)	278 (15%)
「스태포드셔」 Staffordshire, 6	356	44	272	23	17
「레스터셔」 Leicestershire, 9	618	134	311	124	49
「노덤턴셔」 Northamptonshire, 7	531	100	355	66	10
計	1,505	278 (18.1%)	938 (62.3%)	213 (14.2%)	76 (5%)
「노포크」 Norfolk, 25	1,011	316	596	53	50
「서포크」 Suffolk, 14	353	176	146	25	6
計	1,364	492 (36%)	742 (54.3%)	78 (5.7%)	56 (4.1%)
「윌트셔」 Wiltshire, 「서머셋」, Somerset, 「데번셔」 Devonshire, 32	1,102	149	817	136	...
「햄프셔」 Hampshire, 2	258	8	251
英國南部, 10	219	43	158	12	6
計	1,580	200 (12.6%)	1,226 (77.2%)	148 (9.3%)	6 (0.3%)
總 計	6,203	1,213 (19.5%)	3,793 (61.1%)	785 (12.6%)	416 (6.7%)

R.H. Tawney, *op. cit.*, p. 25.

장 많고 다음에 自由保有農은 約 5 分の 1(19.5%) 定期借地農은 8 分の 1에서 9 分の 1의 中間 (12.6%)이다. 또 이것을 地方別로 區分하면 中部地方의 一部와 西部地方의 一部에서는 定期借地農이 다른 어느 地方보다도 많고 「레스터셔」에서는 自由保有農과 거의 同數인 5 分の 1 以上을 차지하고 있으며 西南部 「윌트셔」, 「서머셋셔」, 「데번셔」의 5 個「매너」에서는 定期借地農이 自由保有農보다도 約 2 倍 많다. 經濟的 後進地域인 北部地方 「노던벌랜드」에서는 慣習保有農이 壓倒的으로 많고 全土地保有 人口의 91%를 차지하고 있다.⁽⁸⁾ 더욱 特徵인 것은 東部地方 「노포크」와 「서포크」의 自由保有農의 比率이 全國의 그것의 約 2 倍나 된다는 事實이다. 「노포크」에서는 自由保有農은 全土地保有農의 3 分の 1 以上

(8) 이 事實은 Tawney *op. cit.*, pp. 64—65 의 表와 比較해 보면 보다 明白할 것이다.

(9) Tawney, *op. cit.*, pp. 24—27. 「돔즈데이·북」(Domesday Book)에서는 「서포크」(Suffolk)서는 全小作農의 35%가 *liberi homines* 며 「노포크」서는 그의 32%가 *liberi homines* 또는 *sockemanni* 였다. Tawney, *op. cit.*, p. 27, note 1; Vinogradoff *op. cit.*, p. 196. Hundred Rolls의 分析結果에 依하면 西部地方에서는 隸農保有地의 比率이 큰데 對해서 北部와 東部에서는 自由保有地의 比率이 더 크다. Kosminsky, *op. cit.*, p. 206, Table 9.

「서포크」에서는 그의 約 2 分の 1 以上을 차지하고 있다. 特히 「서포크」의 「매너」의 約半數에서는 自由保有農이 最大의 階層을 形成하고 있으며 어떤 「매너」에서는 그것은 다른 土地保有農에 對해서 2 : 3 또는 4 : 1 의 比率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東部地方에 自由保有農이 많은 것은 早期로부터의 地方的 特殊性에 依한 것이라 하겠다. 「돔즈데이」(Domesday) 時代에 이 地方에는 이미 *liberi homines* 라든가 *sockemanni* 가 多數 存在하고 있었던 것이다.⁽⁹⁾

長期間에 걸쳐 發達된 土地保有形態는 「나이트·서어비스」(*knight service*), 「소키지」(*socage*), 贖本保有(*copyhold*), 寄進寺領永代借地(*frankalmoin*), 勤務職(*seagentry*)에 依한 土地保有의 다섯 가지가 있었으나,⁽¹⁰⁾ 勤務職에 依한 土地保有는 16 世紀 後半에는 事實上 消滅하고 寄進寺領永代借地는 教會와 關係를 가지고 있었음에 不過하므로 여기서 「요오맨」과 關聯해서 問題되는 것은 나머지 세가지 土地保有形態이다.

英國 東南部地方에서 일찍부터 優勢하고 全土地保有人口의 約 5 分の 1 을 차지해서 「요오맨」의 上層을 形成한 自由保有農은 如何한 條件의 土地를 保有하고 있었던가. 自由保有農은 主로 「나이트·서어비스」와 「소키지」에 依한 土地保有였다.

첫째 「나이트·서어비스」에 依한 土地保有를 보자. 그것은 早期에는 軍事的 土地保有였으나 16 世紀가 되면 一種의 單純한 自由保有의 性格이 되었다. 이 土地保有의 「附帶義務」의 하나인 地代는 매우 少額 또는 名目的인 것이 되어 버렸다. 또 服從(*homage*) 忠誠의 誓約(*fealty*) 補助金(*aids*)의 制度도 消滅해서 裁判所에서의 訴訟義務도 많은 地方에서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土地保有의 「附帶義務」中에서 後見權과 權利金(*entry fine*)⁽¹¹⁾의 두가지가 問題가 된다.

自由保有의 一種인 「나이트·서어비스」에 依해서 土地를 保有하고 있는 「요오맨」에게는 그 相續인이 未成年인 경우에 그가 成年에 達하기까지 領主가 保護人으로서 그를 後見하는 權利가 있었다. 그것은 初期에는 被後見人에게도 有益한 것이었으나 16 世紀에는 後見權이 商品과 같이 賣買되게되자 領主에게는 한 收入源이 되었으며 反面 被後見人은 損失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損失을 彌하려고 「나이트·서어비스」에 依한 土地保有農은 領主로부터 멀리 떨어진 地域 또는 特히 王領地에서 後見權을 隱滅 또는 無視했으나 「튜더」(*Tudor*) 朝初期에는 그러한 行爲를 禁하고 後見制度를 強化하기 위하여 特別한 後見裁判所(*Court of*

(10) Campbell, *op. cit.*, p. 108; Kosminsky, *op. cit.*, p. 198.

(11) 權利金은 새로 借地契約를 맺는든가 保有契約의 更新을 할 때 土地所有開始의 許可料로서 領主에 支拂하는 것이다.

(12) Campbell, *op. cit.*, pp. 109—110.

Ward and Liveries)가 設立되었다. 後見權은 「나이트·서어비스」에 依해서 土地를 保有하고 있는 「요오맨」에게는 매우 苛로운 것이었다.⁽¹²⁾ 그 一例로서 「제임즈」一世(James 1) 治下의 初期에 「히포드셔」(Herefordshire)의 「요오맨」 「캐럴즈」(Thomas Caroles)의 한 訴訟例를 보자. 그는 30年前에 그가 遺贈받은 土地의 一部가 「나이트·서어비스」에 依해서 保有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그의 幼少時에 그 事實이 隱蔽되었기 때문에 女王은 그 後見權을 詐欺當했다는 理由로 告訴되고 있다. 萬若 이 告訴事實이 證明되면 「캐럴즈」는 그期間 支拂치 않았던 貨幣全額을 支拂하고 따라서 經濟的으로 相當한 打撃을 받게 될 것이다. 陪審員은 下級裁判所에서 그에게 不利하게 答申했다. 거기서 「캐럴즈」는 國王의 沒收官(Escheater)이 陪審員의 判決을 僞造했다고 해서 이 事件을 星法院(Star Chamber)에 控訴했다. 그 最終結果는 不明이나 後見權問題는 土地保有者에게는 귀찮은 것이었으며 이에 類似한 例는 이 외에도 많이 있는 것이다.⁽¹³⁾ 그러나 「나이트·서어비스」에 依해서 土地를 保有하고 있는 「요오맨」은 少數에 不過했기 때문에⁽¹⁴⁾ 이것이 「요오맨」의 地位에 큰 影響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自由保有地를 가지고 있는 大多數의 「요오맨」의 土地保有形態는 「프리·소키지」(free socage)였다. 이 土地保有는 『裁判所에의 忠誠과 出廷義務를 지고 貨幣地代를 支拂하고』⁽¹⁵⁾ 때로는 其他의 名目的인 地代를 支拂하는 것이었다. 申世에는 「나이트·서어비스」가 「프리·소키지」보다 上級の 土地保有였고 前者는 『「소키지」와 같이 쟁기의 냄새를 맡지 않았』⁽¹⁶⁾으나 16世紀에는 後者は 가장 有利한 土地保有라고 생각되고 後見權이 없는 「나이트·서어비스」의 모든 利益을 享受했던 것이다. 「소키지」에 附帶하고 있는 農業賦役은 16世紀에는 이미 消滅되고 있으며 「裁判所에의 忠誠과 出廷義務」도 別로 強制되지 않았고 自由保有農의 가장 重要한 負擔인 貨幣地代도 舊來부터 固定되어 있는데 貨幣價値는 繼續的으로 下落했기 때문에⁽¹⁷⁾ 名目的인 것에 不過하게 되어 領主에는 거의 利益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事實上의 土地所有者가 되고 있었으며 『16世紀에 英國의 南部地方에서는 自由保有農의 「메너」와의 結付는 實質的인 問題이기 보다는 오히려 形式이라든가 感情의 問題였다. 實際에 있어서 自由土地保有는 大部分 近代의 形態를 取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⁸⁾ 「소키지」에 依한 自由土地保有農은 일찍부터 封建的 諸負擔으로 부터 免除되

(13) *Ibid.*, pp. 110—111.

(14) *Ibid.*, p. 112; Tawney, *op. cit.*, p. 29.

(15) Tawney *op. cit.*, p. 29.

(16) Cowell, "Chivalrie," *The Interpreter*, quot. by Campbell, *op. cit.*, p. 113.

(17) 이에 關해서는 後述.

(18) Tawney, *op. cit.*, p. 30.

어⁽¹⁹⁾ 自己의 創意로 事態에 對處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며 16世紀의 農業變化의 渦中에서도 그가 享有한 法的的安全性 즉 「코몬·로」(Common Law)의 保護下에서 追放될 憂慮도 없이 오히려 그것을 自己에게 有利하게 利用할 수 있었던 것이다. 事實 「노오든」(John Norden)이 말하는 것과같이 自由保有農은 『自己自身の 所有地에서 生計를 세우고 自己의 確實한 相續人을 안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平和이다.』⁽²⁰⁾라는 것을 充分히 感知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며 그들이야말로 漸次 自己의 地位를 改善強化하고 自身の 主導下에 經濟的 諸變化에 對處해서 領主의 直營地를 借地하면서 富裕化해서 次代의 「젠틀맨」을 거기서 補充하는 源泉이 되는 것이다. 『「요오맨」의 先祖들은 15世紀의 無政府狀態下에서는 많은 被害를 입었으나 「튜더」 絶對王制는 그러한 無法的 恐怖에 終止符를 찍고 法律로서 다스려지는 어떠한 社會에서도 이 小土地保有農의 一團은 비록 그들의 힘을 團結해서 行使하는 機會를 가지지는 않았더라도 強力한 한 要素가 된 것이다. 勿論 그들의 重要性을 誇張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들이 農村社會의 慣例에서 한 役割은 不可缺한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多樣性 그 自體는 그들로 하여금 社會的 地位가 相異한 兩端 사이의 連鎖가 되게 하였다.』⁽²¹⁾

土地保有의 性格으로 보면 同一條件으로 保有하고 있는 自由保有農도 그 經濟的 側面=土地保有規模로 보면 慣習小作農과 같이 單純한 「코티저」에서 數「에이커」에서 100「에이커」以上에 이르는 一連의 土地를 保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第3表는 16世紀의 自由保有農의 土地保有規模를 當時의 「매너」記錄에서 作成한 것이다. 그에 依하면 自由保有農에서 100「에이커」以上을 保有하는 者는 8名이며 20「에이커」以下를 保有하고 있는者가 全體의 66%에 達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自由保有農의 保有地가 零細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못이다. 이 表는 檢討된 100個「매너」中에서 自由保有農의 保有地面積을 確認할 수 있는 不過 22個「매너」에서 作成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大自由保有農의 保有地가 充分히 表示되고 있지 않으며 또 貧農數도 그다지 많지 않다. 「토오니」는 正確한 統計가 얻어진다면 20~40「에이커」의 自由保有農이 增大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²²⁾

(19) 例를 들면 「린컨셔」(Lincolnshire)의 「도닝턴」(Donnington) 「매너」서는 「소키지」에 依한 土地保有의 附帶義務는 全혀 없고 「윌트셔」에서도 그렇다. Campbell, *op. cit.*, pp. 114—115. 그러나 이와 같은 自由保有農이라도 相續時에는 權利金(fine)을 支拂해야 하고 그것은 普通 2年分의 地代가 適切한 것으로 看做되었다. 이것은 自由保有農에게는 過重한 負擔은 아니었으나 少額의 現金收入을 가지고 年地代가 5 s.~30 s.의 農民들에게는 적은 負擔은 아니었다. 또 어느 「매너」의 慣習은 讓渡時에도 權利金의 支拂을 要求하고 있으며 또 어느 「매너」에서는 아직 相續稅가 徵收되고 있었다. Campbell, *op. cit.*, pp. 115—117.

(20) Tawney, *op. cit.*, p. 35.

(21) *Ibid.*, p. 37.

(22) *Ibid.*, p. 31.

第 3 表

自由保有農의 保有地面積

計	州名 (數字市「레노」數)							保有面積 (「에이커」)
	「레스터셔」 Leicestershire, 1.....	「윌트셔」 Wiltshire, 1.....	「노던트」 Northants, 4.....	「랜카셔」 Lancashire, 3.....	「스타포드셔」 Staffordshire, 3.....	「사프록」 Suffolk, 4.....	「노퍽」 Norfolk, 6.....	
390	11	6	116	9	24	85	139	保有農總數
70	1	...	10	...	7	27	25	家屋과 小屋 만
69	2	...	11	1	4	18	33	2.5 以下
33	2	...	4	3	2	10	12	2.5~5
48	1	2	13	1	3	11	17	5~10
22	9	1	1	2	9	10~15
17	1	...	5	1	10	15~20
6	1	...	1	...	1	1	2	20~25
4	1	...	2	1	...	25~30
9	4	3	2	30~35
4	2	...	1	...	1	35~40
7	...	1	3	...	1	...	2	40~45
3	1	...	2	45~50
4	...	1	...	1	...	2	...	50~55
1	1	...	55~60
4	...	1	3	60~65
...	65~70
...	70~75
...	75~80
1	1	...	80~85
...	85~90
...	90~95
1	1	95~100
4	2	...	2	100~105
...	105~110
...	110~115
...	115~120
4	...	1	3	120 以上
79	2	...	45	1	...	8	23	不 詳

R.H. Tawncy, *op. cit.*, pp. 32-3, Table I.

自由保有農은 그 土地保有의 性格으로 보아 다른 어떤 農民보다도 有利한 條件에 있고 「그 누구에도 隸屬하지 않고」 自身の 確固한 基礎위에서 着實히 經濟的 地位를 改善할 수 있는 階層이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요오덴」의 上層을 形成했던 것이다⁽²³⁾

23) 「코스민스키」는 13世紀에서 小土地保有者의 政治的 社會的 役割을 強調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음에 많은 「요오맨」이 그에 포함되고 있던 慣習保有農의 土地保有形態를 考察하자. 自由保有農이 16世紀 英國 農村社會에서 차지하는 社會 經濟的 地位가 매우 重要했다는 것은 叙上한 바이나 人口構成으로 보면 그들은 全土地保有農의 20%를 차지함에 不過하고 이에 對해서 慣習保有農은 60%에 達해서 農村에서 重要的 階層을 構成하고 있는 것이다. 慣習保有農 그 中核이 되는 贍本保有農이 重要的 階層이 었다는 것은 當時의 著者들도 그것을 認識하고 있어 「해리슨」(William Harrison)은 『王國의 大部分의 基盤을 形成하고 그것을 維持하는 것은 贍本保有農이다.』⁽²⁴⁾라고 말하고 「코오크」(Coke)도 그에 同意해서 『「잉글랜드」의 3分の 1은 贍本保有農으로 成立하고 있다.』⁽²⁵⁾라고 말하고 있다. 『慣習小作農은 그 數와 支拂에 있어서……16世紀의 農村生活에서 가장 重要的 階層』⁽²⁶⁾이었던 것이다. 贍本保有農의 前身이 中世의 隸農이었다는 것은 「세빈」(A. Savin)의 研究가 論證하는 바이나⁽²⁷⁾ 16世紀에는 封建의 身分關係는 全的으로 없어져서 對物關係로 移行해버렸기 때문에 贍本保有는 社會的으로 卑賤한 土地保有形態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많은 「요오맨」과 「허즈번드맨」과 같이 때로는 「켄틀맨」 騎士 領主마저 土地를 贍本保有하고 있었던 것이다.

慣習小作農은 自由保有農과는 달리 『「매너」의 慣習에 依해서』⁽²⁸⁾ 土地를 保有하는 農民이며 具體的으로는 『「매너」 裁判所에서의 讓渡와 承認에 依해서 移動된 또 裁判所記錄으로 明白히 되는 따위의 「매너」 慣習에 從屬하고 있는 全土地保有者』였다. 그러나 이들 土地 全部가 同一한 「타이틀」로 保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너」의 慣習에 따르고 裁判所記錄의 贍本에 依해서』 土地를 保有하는 贍本保有農과 文書上의 權利없이 保有하고 「가끔 領主의 意思 또는 嗜好 또는 領主와 裁判所의 承認에 依해서 土地를 保有하는」 慣習小作農과 任意小作農(tenant at will)이 있었다. 이 兩者의 差異는 土地保有上의 問題가 發生했을 경우 前者가 그가 가진 贍本에 呼訴할 수 있는데 對해서 後者は 裁判所記錄 또는 單純

말하고 있다. 『이 그룹은 經濟的으로 土地에서 年 £10~£20의 收入을 가지는 騎士에서 20s. 또는 그 以上の 收入을 가지고 있는 自由保有農에 까지 이르고 있다. 騎士는 明白히 將來의 「젠티리」(gentry)를 豫期하고 있다.』 Kosminsky, *op. cit.*, p. 257; do. "Services and Money Rents in the Thirteenth Century," *The Economic History Review*, Vol. V, No.2, April, 1935. 自由保有農이 隸農과 그 地代形態에서 本質的으로 區別되는 것은 後者が 賦役을 提供하는데 對해서 前者는 일찍부터 貨幣地代를 支拂한다는 것이 있으므로 (Kosminsky, *op. cit.*, p. 200) 그 上層部가 「젠티리」의 前身이 있다면 다른 大多數의 自由保有農은 다른 農民에 對한 有利한 地位로 보아 「요오맨」의 上層을 形成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4) W. Harrison, *Description of England*, Bk. 11, p. 242, quot. by Campbell, *op. cit.*, p. 118.

(25) *An Abridgement of the Reports of Sir Edward Coke*, 1793, III. fol 86, quot. by Campbell, *op. cit.*, p. 118.

(26) Tawney, *op. cit.*, p. 41. 慣習保有農이 支拂한 地代의 重要性을 보면 1535년에 74「매너」의 收入中에서 自由保有農의 地代가 £116 慣習保有農의 그것이 £1310이었다.

(27) A. Savin, "English Customary Tenure in the Tudor Period, II. The Villein Pedigree of Copyholder,"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XIX, pp. 45—51; Tawney, *op. cit.*, p. 50.

(28) S.W. Ashley,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England*, p. 44.

한 記憶에 呼訴할 수 있는데 不過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너」記錄과 其他 文書에서는 그것을 不明確하게 使用하는 경우가 많고 또 膳本保有이라도 任意保有農을 兼하고 있어서 그것을 明確히 區別할 수는 없다.⁽²⁹⁾ 어떻게든 다음 第4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全慣習保有

第4表 慣習保有農의 比率

	計	膳本保有農	慣習小作農	任意保有農
「노덤벌랜드」 Northumberland	436	262	45	29
「랭커셔」 Lancashire	451	295	156	...
「스태포드셔」 Staffordsire	272	170	...	102
「레스터셔」 Leicestershire	311	157	...	154
「노덤턴셔」 Northamptonshire	355	253	93	9
「노포크」 Norfolk	396	536	45	15
「서포크」 Suffolk	146	53	82	11
「윌츠」 및 「서머세트」 Wilts and Somerset	817	286	...	31
「햄프셔」 Hampshire	251	251
「잉글랜드」 南部의 他 10個「매너」 ten other manors in the South of England	158	87	45	26
計	3,793	2,950	466	377

R.H. Tawney, *op. cit.*, p. 48.

農타에서 膳本保有農이 大多數(約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膳本保有農은 그 土地를 相續權을 가진 世襲保有인가 또는 生涯間保有인가 또는 數年間 保有인가에 따라서 後述하는 農業革命期에서의 그들의 安全性이 相異하게 되며 『「매너」의 慣習에 의해서』 그 膳本으로 保有하고 있기 때문에 그 慣習의 地方的 偏差에 의해서도 그들의 安全性은 相異했었다.

膳本保有農의 賦役負擔은 16世紀에는 地方에 따라 若干 殘存하고 있는 例가 있기는하나⁽³⁰⁾ 거의 貨幣로 代納케 되고 그것도 穀物價格의 騰貴에도 不拘하고 慣習에 依해서 固定된 固定地代(rent of assize)였다. 즉 賦役의 金納化가 行해진 14世紀에서 16世紀 中葉에 이르기까지 地代는 固定되고 있으며 때로는 減少한 경우도 있다.⁽³¹⁾ 그것은 14世紀 中葉의 大黑死病에 依해서 多數 農民이 死亡 또는 流離하여 많은 土地가 領主의 手中에 復歸한 結果이다.⁽³²⁾ 이러한 低額의 地代는 16世紀에도 依然히 固定되어 存續하고 있으니 그

(29) Tawney, *op. cit.*, p. 47.

(30) 1603년에 「노덤벌랜드」의 「에탈」(Etall) 「매너」에서는 아직도 「隸農의 賦役」이 存在하고 膳本保有農이 領主를 위해서 糞의 運搬 또는 土地의 耕作을 要求當하고 있다. Campbell, *op. cit.*, p. 143. 其他의 例에 關해서는 Tawney, *op. cit.*, pp. 52—53 參照. 또 Savin은 人格의 不自由農이 16世紀에 全人口의 1% 存在하고 있다고 計算하고 있다. Lipson, *op. cit.*, Vol. I, p. 130.

(31) Tawney, *op. cit.*, pp. 115—117의 慣習地代表 參照.

(32) 例를들면 「홀링턴」(Hewlington) 「매너」서는 從前에 支拂되던 年地代總額 £105 Gs.가 衰微

것은 領主의 地代收入의 減少와 他面 農民의 收入改善을 意味했다. 地代의 固定化는 農民 繁榮의 한 要素가 되었던 것이며 『(固定地代)가 過度의 權利金에 依해서 相殺되지 않은 경우에는 去來의 增大 貨幣價値의 低下 또는 農耕法改良이 慣習小作農에게 結果한 모든 利益은 小作農에 依해서 獲得되었다. 競爭의 壓力에 對해서 그들은 「매너」 慣習에 依해서 保護되고 있으므로 經濟的 繁榮 그 自體의 增大와 함께 增大하는 不勞所得을 享受했던 것이다. (33)

贍本保有農이 享受한 不勞所得의 實際的 크기는 慣習地代와 競爭地代를 比較함으로써 推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608 年에 「앰블」(Amble) 「매너」서는 慣習地代가 £16. 0s. 5d. 있는데 對해서 地代以外의 年價値는 £93 4s. 4d. 며 同年 「헉섬」(Hexham)의 大「매너」서는 贍本保有農 314 名이 支拂하는 地代가 £126 4s. 8 1/4d. 인데 對해서 「舊 地代를 넘는 小作料」는 £624 4s. 1d. 였다. 이 競爭地代와 慣習地代와의 差額이 領主에게는 損失 인데 對해서 農民에게는 「不勞所得」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例는 다른 「매너」서도 發見되며 한 例를들면 「레스터셔」의 「바클리」(Barkley) 「매너」에서는 1636 年에 自由保有農과 慣習保有農이 支拂한 地代는 合計 £11 8s. 4 1/2d. 였으나 그 保有地의 競爭地代는 £215 1s. 6d. 였던 것이다. (34)

이러한 差額이 모두 贍本保有農의 不勞所得이 되었다고 보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領主는 「매너」의 慣習이 嚴存하고 있는 경우에도 權利金을 引上함으로써 그에 對處할 수 있었다. 그러나 數百年間 固定地代를 支拂하는 贍本保有農中에서 市場에서 販賣한 生産物의 5 分의 1, 6 分의 1 또는 18 分의 1 을 支拂하는 農民은 어쨌든 繁榮의 一條件을 占했던 것이며 그러한 農民은 漸次 資本을 蓄積해서 保有地를 增大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35) 또 土地保有條件과 함께 贍本保有農의 地位에 重要한 影響을 주었던 慣習도 여러가지 地方的 偏差가 있으나 그들에게 有利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1563 年의 「버스키」(Buskey) 「매너」의 慣習(36) 16 個條를 보면 贍本保有農에 對한 保護規定이 壓倒的으로 많고 贍本保有權 相續權 土地讓渡權(37) 共同權이 明白히 確立되고 있으며 權利金 地代 相續稅등이 固定되어

했던 것이나 이것은 大黑死病과 Owen Glendower 의 一擧때문에 이 地方이 荒廢된 結果였다. Tawney, *op. cit.*, p. 286.

(33) *Ibid.*, p. 118.

(34) *Ibid.*, p. 119.

(35) *Ibid.*, p. 120.

(36) *Ibid.*, pp. 126—128. 『(慣習은 農民에게는 20 世紀에서 생각되는 것과 같은) 「깊고 陳腐하며 無味乾燥한 慣習」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버러」(borough) 憲章에서 普通인 것과 같이 「오랜 慣習과 自由」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매너」의 慣習은 農民의 權利義務를 그들의 日常生活에서 調整하는 規制體여서 그것은 一種의 法律이며 自由다.』 *Ibid.*, p. 131.

(37) 贍本保有農이 할 수 있었던 土地의 讓渡貸與期間은 3 年이었으나 實質的으로는 더 오랫동안

領主의 恣意에서 贍本保有農을 保護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오맨」의 大多數를 그속에 包含하고 있는 贍本保有農은 有利한 土地保有條件과 慣習下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漸次 그 地位를 改善하여 後述하는 바와 같이 農業變化期에서 追放과 土地奪取에 依해서 衰退하면서도 他面에 보다 富裕한 農民으로 上昇하는 基礎를 가졌던 것이다. 이와같은 贍本保有農의 地位를 「코오크」(Sir Edward Coke)는 樂觀的으로 描寫해서 다음과같이 말하고 있다. 『이제야 贍本保有農은 確實한 基礎위에 서 있다. 그들의 土地保有가 強要하고 慣習이 要求하는 諸負擔을 注意깊게 遂行하기 위하여 主要機會에 特別한 注意를 한다면 그들은 領主의 不愉快을 憂慮하지 않고 모든 突風에도 몸을 떨음이 없이 安心하게 먹고 마시고 잔다. 따라서 領主로 하여금 얼굴을 찡그린다면 하도록 하라. 贍本保有農은 自己의 安全을 아는데에 配慮하지 않고 危險하지도 않다.……事實 時間은 여러가지 面에서 贍本保有農을 有利하게 했다.』⁽³⁸⁾

以上에서 우리는 「요오맨」의 地位를 考察할 때 가장 重要的 側面인 土地保有形態와 그 負擔問題를 「요오맨」의 大部分을 構成하고 있던 自由保有農과 贍本保有農에 關해서 考察했다. 結論的으로 말해서 自由保有農은 「코몬·로」(Common Law)로 保護되고 그위에 經濟的 負擔은 實質的으로 거의 消滅되고 있었으며 贍本保有農은 慣習으로 保護되고 長期間에 걸친 地代의 固定化와 物價上昇에 의해서 剩餘를 手中에 넣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第 5 表 「레스터셔」 農民財產目錄(1500—1603)

動 產 評 價 額	1500~31	1570~1	1588	1603
£ 10 以下	12	7	1	2
10~ 20	25	9	17	1
20~ 30	8	19	15	4
30~ 40	5	8	12	3
40~ 50	4	12	13	5
50~ 60	1	16	13	4
60~ 80	1	13	13	7
80~ 100	2	9	12	3
100~ 以上	—	9	13	14
財 產 目 錄 總 數	58	102	109	43
財 產 目 錄 的 中 位 價 額	£14 7s. 11d.	£46 1s. 6d.	£46 16s. 8d.	£67 2s. 4d.

※ W.G. Hoskins, *Essays in Leicestershire History*, p.135.

貸與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즉 「스태포드셔」(Staffordshire)의 1 「매너」에서 한 贍本保有農은 自己의 土地를 領主의 許可없이 3年間 貸與할 수 있었다. 그래서 「3年에서 3年으로」 21年間 貸與할 수 있었으며 이 地方에서는 定期借地(lease)라는 말이 一般的이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Campbell, *op. cit.*, p. 130.

(38) *Ibid.*, p. 131; Tawney, *op. cit.*, p. 291.

「요오맨」은 自己를 繁榮시킬 수 있는 一條件을 잡았던 것이며 그 基礎위에서 그들은 16世紀의 經過中에 富裕化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오맨」의 富裕化傾向은 「레스터셔」의 例이나 第 5 表에 依해서 例證된다. 1500~1531 年에서 1588 年까지의 사이에 物價가 約 2 倍로 上昇했다고는 하나 農民財産의 平均價値는 同期間에 3 倍 以上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 時期의 農民의 富裕化傾向을 明示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農村에서 「요오맨」은 如何한 經濟活動에 依해서 漸次 富裕化될 수 있었는가.

2. 保有地의 增大와 農業經營

叙上한바와 같이 有利한 土地保有條件을 가진 「요오맨」은 그것을 背景으로 해서 小規模 「인클로우저」와 土地交換 등에 依해서 土地를 統合하고 直營地를 借地함으로써 그 經營規模를 擴大하고 또 市場目的의 合理的 農業經營을 함으로써 더욱 富裕해 졌다.

먼저 「요오맨」이 「인클로우저」를 하면서 自己의 保有地를 增大시키는 過程을 보자. 그들은 共同體의 規制에 基礎를 둔 開放耕地制度의 制約을 克服하고 그 經營能率을 올리기 위해서 土地의 買賣 交換에 依해서 일찍부터 「인클로우저」를 遂行하고 있다. 이러한 小規模 「인클로우저」는 領主에 依한 大規模 「인클로우저」의 以前에도 行해졌고 또 兩者가 並行해서 行해지기도 했다. 領主와 大借地農에 依해서 이루어진 大規模 「인클로우저」가 農民의 犧牲위에서 行해진데 對해서 小規模 「인클로우저」는 農民全體의 利益에서 行해진 데에 그 特徵이 있는 것이다.

農民들은 共同耕地의 地條(strips)를 相互의 同意에 依해서 交換·統合하고 또는 村落自體에 依해서 共同地를 圍牆하고 있으며⁽¹⁾ 領主는 그에 同意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農民과 村落自體에 依한 이러한 「인클로우저」는 『土地의 空間的인 再編成을 했으나 그 經濟的 配分을 變化시키지 않았으며 (農民들은) 外延的으로 消失한 것을 內延的으로 獲得했던 것이다.』⁽²⁾ 「피즈허버트」(Fitzherbert)는 이러한 過程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各人은 隣接者와 交換하고 그들(以前에는 散在하고 있던 地片——「토오니」)을 모으고 各 耕地에 別個의 圍牆地를 만들고 그들을 한 耕地에 모으고 그 全部를 한 圍牆地로 만든다. 또 그의 共同放牧地 割當部分에도 別個의 圍牆地가 만들어지고 採草地 割當部分도 그 自體 別個의 圍牆地가 되었으며 그들 모두가 冬期에나 夏期에나 個別的으로 保有되었다. 그래서 모든 「코터저」도 그 地代에 따라서 割當된 部分을 保有했다.』⁽³⁾ 「도세트」(Dorset)의 「에윈」(Ewerne) 「매너」에서는 領主의 許可를 얻어 開放耕地를 圍牆하고 分散地條를 統合

(1) Tawney, *op. cit.*, pp. 151, 157.

(2) *Ibid.*, pp. 152—3.

(3) *Ibid.*, p. 152.

시켜서 각각 別個로 그 土地를 保有하고 있었다.⁽⁴⁾ 따라서 「요오맨」을 先頭로해서 農民이 強力히 「인클로우저」에 反對하고 있는 것은 「인클로우저」 運動一般에 反對했기 때문이 아니라 領主가 農民의 利益에 反對해서 一方的으로 그것을 遂行하는 경우이며 經營의 合理化와 保有地增大을 위한 「인클로우저」에는 農民이 스스로 이에 參加하고 있다고 하겠다.

協定에 依해서 「인클로우저」가 行해진 典型的인 例를 우리는 「노덤벌랜드」의 「코우펜」(Cowpen) 「매너」에서 볼 수 있다. 이 「매너」서는 1619 年에 「인클로우저」의 一般的 協定이 作成되었고 10 名의 土地占有者——騎士 1 名 「에스콰이어」(Esquire) 1 名 「젠틀맨」 3 名 「요오맨」 5 名——가 協定の 作成을 打合하여 그 「인클로우저」의 目的이 土地의 浪費와 疲弊를 防止하고 改良農業을 營爲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全土地가 分配되고 있는 2 耕地의 各各으로 各自의 保有地에 比例해서 「같은 持分과 配分」을 하여야 했고 그 配分은 「어떤자가 最良의 土地를 가진 다든가 다른자가 最惡에 土地를 가진 다든가 하지 않도록」 配慮되어야 했다. 그 結果는 5 名의 「요오맨」에 有利했던 것 같다. 즉 騎士는 最大部分인 594 「에이커」의 放牧地와 耕地 그리고 11 「에이커」의 採草地를 받았다. 다음에 最大의 192 「에이커」의 耕地와 放牧地 그리고 32 「에이커」의 採草地는 1 名의 「요오맨」에 넘어갔다. 다른 3 名의 「요오맨」과 1 名의 「젠틀맨」은 各各 93 「에이커」의 耕地와 放牧地 11 「에이커」의 採草地를 그리고 殘餘의 2 名의 「젠틀맨」과 1 名의 「요오맨」은 若干 적은 部分을 받았던 것이다.⁽⁵⁾ 「라우튼」(Loughton) 「매너」 「[벅스」(Bucks)에서도 1619 年에 같은 것이 行해지고 있다. 이 「매너」의 農民은 大部分 耕作農業에 從事하고 있었으나 耕作用 家畜을 飼育하는데 充分한 放牧地와 採草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거기서 乾草 등 飼料價格이 騰貴해서 農民은 外部에서 飼料를 購入할 수 없게되자 「村落全體와 全住民의 一般的 善과 便宜를 위하여」 領主와 農民이 協定해서 各土地를 圍牆, 個別的으로 利用하고 있다.⁽⁶⁾

그러나 同意下에서 「共同利益을 위해서」 遂行된 「인클로우저」도 반드시 公平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인클로우저」 自體가 이미 共同體規制에서의 離脫을 內包하고 있으며 土地의 再編成이 었다면 다른 農民보다도 經濟的 優位에 서 있는 「요오맨」이 이過程을 自己에게 有利하게 하고 그의 保有地 增大에 利用하고 있다는 것은 때로는 「요오맨」 自身이 圍牆者로서 非難當하고 있다⁽⁷⁾는 事實에 依해서도 推察할 수 있을 것이다. 叙上한 「코우

(4) *Ibid.*, p. 157.

(5) *Ibid.*, pp. 157--8; Campbell, *op. cit.*, p. 87.

(6) Campbell, *op. cit.*, p. 90.

(7) 「제임즈」 一世時代의 「벨라드」는 다음과 같이 부르고 있다. Campbell, *Ibid.*, p. 89.

펜」 「매나」는 그 一例인 것이다.

더욱 重要的 것은 協定에 依한 「인클로우저」가 아니라 아무런 一般的 同意없이 個個人의 主導下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주로 放牧地와 採草地를 斷片的으로 蠶食하는 過程이 었다. 15世紀 中葉까지는 農民에 依한 이러한 「인클로우저」가 耕地의 「인클로우저」보다도 많이 行해졌던 것이다. 그過程에서 「요오맨」은 到處에서 積極的으로 「인클로우저」를 위한 活動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共同權을 侵害했다는 理由로 非難을 받고 있는 것이다.⁽⁸⁾ 그 例로서 1566年에 「스탐웨이」(Stamway) 「매너」 「[에섹스]」의 한 「요오맨」은 「共同地의 大部分」인 約 30「에이커」를 圍籬했다. 또 「몬머드셔」(Monmouthshire)의 한 「요오맨」은 17世紀 初頭에 全住民이 共同權을 行使하고 있는 荒蕪地(waste)에서 60~80「에이커」를 圍籬해서 非難을 받고 있으며 「허포드셔」(Herefordshire)의 한 「요오맨」은 「王領畝에 옛적부터 있던 共同地를 울타리로서 切斷 取得한」 理由로 非難되었다.⁽⁹⁾ 그외에 「요오맨」은 때로는 公道마저 蠶食하고 있으며⁽¹⁰⁾ 森林과 沼澤地도 圍籬하고 있다는 것이다.⁽¹¹⁾

以上과 같이 「요오맨」은 交換 賣買에 依한 土地의 統合 「인클로우저」와 放牧地 採草地 其他 未開拓地의 蠶食 「인클로우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요오맨」에 依해서 遂行된 「인클로우저」의 範圍를 近似的으로나마도 推算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 過程은 「요오맨」의 保有地增大에 적지 않게 貢獻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인클로우저」는 「그 結果로서 小麥生産의 大增加, 改良된 放牧과 家畜飼育機會, 그리고 地價의 結果의 上昇을 招來한 것」⁽¹²⁾이며 그것이 「요오맨」의 經濟的 地位를 有利하게 했다는 것은 明白하다. 더욱 「요오맨」은 그 增大된 經濟力으로 領主의 直營地마저 借地해서 自己의 保有地에 附加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요오맨」에 依한 直營地의 借地에 關해서 보자. 直營地가 「매너」의 中心이 되지 않게 되고 農民의 賦役으로 耕作되지 않게 되자 일찍부터 農民에 貸出되게 되었다는 것은 叙上한 바이나, 特히 16世紀에는 『(直營地를 一定期間 貸與한다는 것이) 直營地를 處

There are many rich men
Both yeomen and gentry
Who for their own private gain
Hurt a whole country.

(8) Tawney *op. cit.*, pp. 159, 161-2.

(9) Campbell, *op. cit.*, p. 93.

(10) 이러한 事實은 當時의 四季裁判所의 記錄에 充滿하고 있다. *Ibid.*, pp. 93-4.

(11) 例를 들면 「윌트셔」의 한 「요오맨」은 11「에이커」의 土地를 沼澤地로 圍籬했고 「서섹스」(Sussex)의 한 「요오맨」은 若干의 土地를 森林으로 取得했던 것이다. 이들은 不毛地로 地代를 發生시 킴으로 領主의 歡迎을 받았다. *Ibid.*, p. 96.

(12) Tawney, *op. cit.*, p. 152.

分하는 普通의 方法이 있다.』⁽¹³⁾ 若干의 例外는 있으나 全體的으로 보아 大部分의 直營地는 16世紀 中葉까지 貸與되고 있었으며 그 過程에서 「요오벤」도 積極的으로 借地를 하고 있는 것이다.

直營地の 貸出에는 두가지 形態가 있었다. 첫째는 直營地를 多數의 農民에게 分割해서 貸出하는 形態이며 이 경우에는 共同體의 意識이 強力히 作用하고 있다. 이 借地形態는 全國的으로 볼 수 있으나 特히 英國 西部地方에서 많이 볼 수 있다. 例를들면 「애블로드」(Ablode) 「매너」[서머세트셔]에서는 1515年까지에 直營地가 17名의 慣習保有農에 貸出되고 있으며 「사우드·벤투」(South Bent)에서는 18名의 農民에게 貸出되고 있다. 「하이엄」(Higham) 「노덤턴셔」[(Northamptonshire)], 「스톤트비」(Stondeby) 「스태포드셔」에서도 多數의 農民에게 直營地가 分割貸與 되고 있다.⁽¹⁴⁾ 또 若干의 農民이 直營地를 一括借地해서 그것을 村落農民에게 再貸與(sub-letting; sub-tenancy)⁽¹⁵⁾ 하거나 또는 共同耕作을 行하고 있는 경우와 多數의 農民이 共同해서 借地條件에 關해서 領主와 契約을 맺고 있는 경우가 있다.⁽¹⁶⁾ 이러한 借地形態는 共同體의 原理 위에서 農民全體의 利益이 되었다는 것에 注意하여야 할 것이다. 즉 『어떤 경우에는 直營地가 農民間에 全히 같은 面積으로 分割되었으므로 모든 農民은 以前보다 많은 土地를 가지고 있으나 그 保有地의 相對的 面積은 不變하다.』⁽¹⁷⁾는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브리그스토크」(Brigstock) 「매너」[노덤턴셔]에서는 直營地가 22名의 小作農에 依해서 保有되고 있으며 「노덤벌랜드」(Northumberland)의 몇몇 「매너」에서는 慣習保有地面積의 增大가 農民間에 完全히 平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明白히 個人에 依한 散發的 蠶食에 依해서가 아니라 어느 共同的

(13) *Ibid.*, p. 202.

(14) *Ibid.*, p. 204.

(15) 吉岡昭彦氏는 이러한 農民에 依한 土地의 再貸與를 英國에서의 寄生地主의 傾向으로 보고 그것을 「로센데일」(Rossendale) 「랭커셔」地方에서 論證하려고 하고 있다. (『寄生地主制分析基準——イギリス絶對王制成立期の農民層「分解」——』 福島大學經濟學會編 『寄生地主制の研究』所收) 그러나 이 경우의 再貸與는 寄生地主形成에의 傾斜로서 보아도 農民의 代表格인 者가 農民의 共同的 利益을 위해서 便宜上 直營地를 一括 賃借하여 그것을 農民에게 平等하게 配分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妥當할 것이다. (Tawney, *op. cit.*, pp. 205-7. 矢口孝次郎編 『イギリス資本主義の展開』 35面 參照). 英國에서의 寄生地主制의 存在與否는 더 研究되어야 할 問題며 그 點에서 吉岡氏의 前掲論文은 注目할만한 研究이다. 그러나 氏가 依據하고 있는 史料가 말하자면 西部의 邊境이라 할 수 있는 後進地域의 그것이며 따라서 그것으로서 英國의 寄生地主制成立을 論斷한다는 데에는 問題가 있다고 하겠다.

(16) 例를 들면 「카슬·코움」(Castle Combe)서는 1454年에 直營地가 4名의 農民에 貸與되었으나 그것은 모든 殘餘農民에게 再貸與하기 위한 것이었고 「서머세트셔」의 한 「매너」서는 12名의 農民이 250 에이커의 土地와 羊舍를 40年間 8의 地代로 共同賃借하고 있다. Tawney, *op. cit.*, pp. 205-6.

(17) *Ibid.*, pp. 206-7.

計畫에 의한 配分에 依해서 各自의 保有地가 增大하고 있다는 것을 表示하고 있다.⁽¹⁸⁾ 이렇게해서 農民은 共同體的 基礎위에서 直營地를 借地하고 있으며 여기에 農民層이 富裕해질 基礎가 確立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의 直營地貸出形態는 1名 또는 數名の 借地農(farmer)에 依한 一括借地며 16世紀 中葉以降에는 이 傾向이 強해져서 借地農의 保有地面積은 其他 農民全體의 保有地面積과 거의 같게 되고 있다. 다음의 第6表는 16世紀 中葉에 大借地農의 形成을 表示한다. 全體的으로 보면 67名中의 半數以上인 37名이 200「에이커」以上の 土地를 가지고 있으며 4分の 1 以上の 土地가 350「에이커」에 達하고 있다. 그들은 大借地農이지만 그러나 이미 富裕해진 「요오맨」은 이와 같은 大規模의 借地도 할 수 있었다. 그 경우에 借地期間도 여러가지가 있어서 數年 生涯 또는 數世代등의 期間이 있었으나 普通은 南部地方에서는 21

第 6 表 借地農의 經營規模

保有面積 「에이커」	5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以下	99	149	199	249	299	349	399	449	499	549	599	649	699	749	799	849	900	
農場數																			
「노포크」 Norfolk 6 「메너」의 18農場	...	2	2	3	1	...	3	1	...	2	3	1
「윌트셔」 Wiltshire 23 「메너」의 31農場	4	2	4	4	3	4	3	...	2	1	1	1	2	...
數州 13 「메너」의 18農場	2	3	3	1	3	2	1	3
計 52 「메너」의 67農場	6	7	9	8	7	6	7	1	2	6	4	1	...	1	2	...

R.H. Tawney *op. cit.*, p. 212.

年 西部地方에서는 99年 以上の 것이 많다.⁽¹⁹⁾ 史料에 依하면 1570~1649年에 「서섹스」(Sussex)의 67名의 定期借地人中에는 「젠틀맨」 18名, 商人 12名, 「허즈번드맨」 3名 「요오맨」 30名이며 그 地代도 最低 6d.에서 最高 £240에 達하고 있다.⁽²⁰⁾ 「요오맨」은 가끔 높은 地代로 借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포크」의 한 「요오맨」은 年地代 £92, 21年 契約으로 借地하고 「케임브리지셔」(Cambridgeshire)의 한 「요오맨」은 「메너」館과 土地를 £40로 借用하고 있다. 그 위에 定期借地는 購買에의 一段階에 不過하는 경우도 있다. 「린컨셔」(Lincolnshire)의 「요오맨」 「윌립」(Robert Phillip)은 1583年에 「위싱턴」(Wishington) 「메너」를 £45의 權利金과 年 £8 8s. 2d.의 地代로 17年間 借地했었으나 2年後에

(18) *Ibid.*, p. 206-7, note 6.

(19) Campbell, *op. cit.*, pp. 82-3.

(20) *Ibid.*, p. 81.

그는 그 「매너」와 그에 附加해 있는 土地를 £1006 10s.에 購入해서 1603년에는 「젠틀맨」에 上昇하고 있다.⁽²¹⁾ 1589년에 「켄트」(Kent)의 「요오맨」 「이들리」(John Idley)는 『124 「에이커」의 土地와 3棟의 家屋과 果樹園과 其他의 附屬物에 있는 現在와 將來의 모든 權利를 이미 그 土地를 占有하고 있던 「구드네스톤」(Goodnestone)의 「요오맨」인 「리처즈」(John Richards)에 讓渡』⁽²²⁾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요오맨」이 活潑히 定期借地를 ——때로는 大規模로——하고 있다는 것은 叙上한 바와 같은 小規模 「인클로우저」와 함께 그들의 土地의 擴大와 市場을 위한 農業經營의 合理化에 依해서 相當程度 富裕해지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 하겠다. 事實 「요오맨」의 經濟的 基礎는 무엇보다도 農業經營에 있었으므로⁽²³⁾ 그들은 土地의 合理的 利用에 依해서 生産物을 增大시키며 可能한限 利益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農業經營을 하고 있는 「요오맨」의 典型的 例를 17世紀 初頭 「버크셔」(Berkshire)의 「로더」(Robert Loder)⁽²⁴⁾에서 發見할 수 있는 것이나 「요오맨」은 到處에서 生産物增大를 위하여 土壤과 農具의 改良을 試圖하고 있으며⁽²⁵⁾ 恒常 市場에 注意해서 特히 富裕한 「요오맨」은 自己의 生産物販賣를 穀物價格의 變動에 對應시킬 수가 있었다.⁽²⁶⁾ 따라서 그 農業經營도 그 地方에 適合한 形態를 取하게 되고 그것은 이 時期에 地域에 의한 特産物生産이 盛行하고 있다는 事實에 依해서도 例示된다.⁽²⁷⁾ 主要한 것으로써 例를 들면 「체셔」(Cheshire)와 「쉬로프셔」(Shropshire) 地方에서의 酪農業 「서포크」와 「켄트」 地方에서의 「호프」(hop) 그리고 「레스터셔」 地方에서의 豆類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農業經營에 依해서 「요오맨」은 많은 利益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요오맨」이 特産物生産을 大規模로 行하고 市場生産을 하면서 農業經營의 近代化에 前進하고 있는 例로써 「레스터셔」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勿論 該州를 가지고 英國

(21) *Ibid.*, pp. 80—81.

(22) *Ibid.*, p. 73.

(23) 「요오맨」이 農業 以外에서도 많은 收入을 얻었다는 것은 明白하다. 즉 그들은 手工業을 한다든가 店舖 水車 書店 等を 經營하고 있다. 그러나 「요오맨」과 「젠틀리」에 더욱 큰 機會을 준 것은 石炭 鐵 毛織物工業이 었다. Campbell, *op. cit.*, pp. 156—61. 特히 「요오맨」의 毛織物工業에의 進出에 關해서는 大塚久雄著 『歐洲經濟史序說』 上二, 185—206面 參照.

(24) 小松芳喬 「十七世紀の二圃農法」 『封建英國とその崩壞過程』 所收 第9論文 參照.

(25) 施肥의 增大와 農具改良에 關해서는 Campbell, *op. cit.*, pp. 171—83; Tawney, *op. cit.*, pp. 110—11. 參照.

(26) Campbell, *op. cit.*, p. 184; Tawney, *op. cit.*, pp. 111—3.

(27) 酪農에 關해서는 Campbell, *op. cit.*, pp. 204—5, 호프에 關해서는 Curtler, *A Short History of English Agriculture*, Chap. IX 參照 「호프」의 導入에 關해서는 다음과 같은 「벨라드」가 있다.
“Hops, Reformatations, bays and beer

Came into England all in one year.”
Campbell, *Ibid.*, pp. 180—181.

全體를 論할 수는 없으나 該州는 「그레이」(H.L. Gray)가 말하는 바와같이 所謂 「미드랜드 制度」 地方의 中心部에 位置하는 하나의 典型的인 州이며 그 農業經營은 當時의 農業經營의 한 例로서 매우 興味있는 것이다.

農業生産을 考察하기 前에 먼저 該州의 土地利用狀況을 第7表에 依해서 보면 이 地方이 相當程度 放牧農에 從事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耕地 68%에 對해서 放牧地 (「레이」(ley)地 13%, 採草地 15% 圍牆地 4% 以下)는 32%에 達하고 있다. 또 이 時期에는 大部分의 耕地가 아직 開放耕地內에 存在하고 있었다는 것은 圍牆地가 全耕地面積의 4%에 不過하다는 事實에 依해서도 推測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게이」(E.F. Gay)가 「미드랜드」 地方의 圍牆規模로서 낸 數字(6%)에 가깝다.⁽²⁸⁾ 그러나 이 表에 依해서 注目되는 것은 開放耕地內에 注目할만한 變化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開放耕地內에서의 「레이」(ley)의 出現과 그의 相當程度의 普及(13%)이며 이것은 圍牆과 함께 開放耕地의 枠內에서의 農業經營의 個別化와 그 高度化를 志向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레이」地는 採草地와는 다른 것이며 耕地를 一定期間 個別的으로 「레이」(牧草地)에 轉換시키고 그것을 放牧地로서 利用—— 그렇게 함으로써 地味도 恢復된다——하는 牧草地

第 7 表 「러터워드」 Lutterworth 7 農場의 土地利用, 1607 年
(面積은 모두 「에이커」로 表示)

農場 番號	面 積	圍 牆 地	耕 地	「레이」地 Leys	採 草 地	合 計
1	「버기트」 3 virg.	$\frac{3}{4}$	36	$4\frac{1}{4}$	9	50
2	3	$3\frac{1}{4}$	38	10	8	$59\frac{1}{4}$
3	3	$2\frac{1}{2}$	37	$11\frac{1}{2}$	$8\frac{1}{2}$	$59\frac{1}{2}$
4	1	1	$12\frac{4}{1}$	$2\frac{3}{8}$	3	$18\frac{5}{8}$
5	1	$1\frac{1}{4}$	$17\frac{1}{2}$	$1\frac{1}{2}$	2	$22\frac{1}{4}$
6	3	$1\frac{3}{4}$	38	$5\frac{1}{4}$	$8\frac{1}{2}$	$53\frac{1}{2}$
7	2	$\frac{3}{8}$	24	3	$5\frac{1}{4}$	$32\frac{5}{8}$
合 計	16virg.	$10\frac{7}{8}$ (4%)	$202\frac{3}{4}$ (68%)	$37\frac{7}{8}$ (13%)	$44\frac{1}{4}$ (15%)	$295\frac{3}{4}$

W.G. Hoskins, *op. cit.*, p. 140.

(28) E. F. Gay, "Enclosure in England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7, p. 586.

다. 「레이」地는 그後에 再耕作되고 있는것 같으며 그것은 開放耕地制度의 枠內에서 輪作을 하면서 農耕과 牧畜의 混成農業(mixed farming)으로 經營을 合理化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²⁹⁾ 16世紀에는 「레이」는 아직 廣範히 普及되고 있지는 않으나 家畜의 飼育이 共同放牧權에 依해서 嚴格히 規制되고 있는 狀態下에서⁽³⁰⁾ 「레이」의 導入은 家畜 飼育의 困難을 緩和 克服하면서 漸次 改良穀草式農業經營에의 移行을 志向하는 것이며 또 「레이」의 漸次的 普及은 農民으로 하여금 共同體的 農業慣行에 從屬시킴 없이 耕地의 個別的 利用에 依해서 開放耕地制度를 內部로부터 崩壞시키고 農業의 近代化過程에서 重要한 役割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農業方法의 改良下에 農民은 그 特產物인 豆類作物을 廣範히 作付하고 있다. 事實 「레스터셔」는 豆科作物의 栽培에 가장 適合한 地方이며 일찍부터 그것이 많이 栽培되고 있었으나⁽³¹⁾ 16世紀에 그것이 急激히 增加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 第8表에 依해서 明白히 表示되고 있다.

第 8 表 作物栽培 (面積은 「에이커」)

作物	年 度	1500~31		1558	
		播種面積	全播種面積에 對한 比率	播種面積	全播種面積에 對한 比率
小 麥		52	13.8%	30	8½%
「타 이」 麥		19	5.0%		
大 麥		142	37.6%	135¼	38½%
豆 類		164	43.3%		
燕 麥		1½	0.4%	9½	3%
合 計		378½		350½	100%

W.G. Hoskins, *op. cit.*, pp. 161, 171에서 作成.

(29). Hosins, *op. cit.*, p. 143. 「캠벨」女史도 耕作後에 耕地를 牧草地로 轉換하는 “convertible husbandry”가 이 時期에 增大하고 그것은 食糧供給을 調節하는 同時에 土地를 改良하는 方法으로서 成功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Campbell, *op. cit.*, p. 205. 「레이」에 關係서는 椎名重明 「イギリス市民革命以前における農業問題——レイの普及と土地保有と入會權との分離を中心として——」上・下『社會經濟史學』21卷 5・6號 22卷 1號 參照.

(30) 飼育하는 家畜數의 制限은 耕地만이 아니라 放牧地面積에 따라 村落에 따라서도 다르다. 一般的으로 16世紀 「레스터셔」의 「普通」面積의 農場에서는 共同放牧權은 少數이나마 여러種類의 家畜과함께 1「에이커」當 1¼頭의 羊을 放牧할 程度의 것이었다. Hoskins, *op. cit.*, pp. 144-5. 또 곳에 따라서는 모든 借地 保有農에 6頭의 羊의 放牧權을 認定하고 그에 追加해서 開放耕地에 있는 保有地面積에 比例해서 放牧權도 달랐다. Campbell, *op. cit.*, p. 199.

(31) 14.5世紀에는 播種面積의 約 30%를 豆類에 充當하고 春穀은 「오오트」麥 6%를 除外하면 72.5%가 되고 있다. R.H. Hilt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Some Leicestershire Estates in the 14th & 15th Century*, p. 63, Table V.

그러나 그 경우에 問題인 것은 播種作物의 不過 5 分の 1 이 冬穀이고 나머지 5 分の 4 가 春穀이므로 勞動配分の 均衡이 破壞되어 一時的으로 (이 경우에는 春期) 勞動力을 많이 必要로 했던 것이며 이 一時的인 勞動力不足을 어떻게 克服했는가라는 것이다. 「호스킨즈」(W.G. Hoskins)는 되도록 일찍 春穀을 作付함으로써 勞動力不足을 緩和시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³²⁾ 더욱 그 경우에 「요오맨」은 自己의 家族勞動 以外에 若干의 日雇傭勞動者를 雇傭하고 있으며 富裕한 「요오맨」은 此外에 數名의 男女使用人을 가지고 있었다.⁽³³⁾ 「토오니」의 計算에 依하면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의 「요오맨」은 平均 1.1 名의 男子使用人을 가지고 있었다.⁽³⁴⁾

叙上한 바와같이 「레이」의 導入이라든가 豆類作物의 增大가 意味하는 바는 明白할 것이다. 16 世紀農村에서 「가장 有利한」 것은 羊의 飼育이었으므로 「레스터셔」農民이 그러한 方法에 依해서 羊을 보다 많이 飼育하고⁽³⁵⁾ 그 農業經營을 재빨리 商業的 農業으로 編成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事實 從來 1 農場에서 約 34 頭의 羊을 飼育할 수 있었음에 不過했던 것이 1603 년에는 相當히 增加해서 52 頭가 되고 있으며⁽³⁶⁾ 또 初期에는 羊을 包含해서 家畜은 飼料不足으로 因하여 冬期에는 大量으로 屠殺되는 것이 普通이었으나 16 世紀의 該州에서는 農民은 冬期에도 相當數의 羊과 家畜을 飼育하는데에 成功하고 있다.⁽³⁷⁾

「요오맨」이 飼育하고 있는 羊數를 보면 16 世紀 中葉에 富裕한 「요오맨」은 數 100 頭에서 1340 頭를 所有하고 있는 例도 있으나⁽³⁸⁾ 平均數는 그보다 훨씬 적은 것이 었다. 그것은 羊의 賣買例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1612~24 年間 「레스터셔」市場에서의 羊購買人 申에서 많은 「요오맨」이 한꺼번에 100~200 頭를 購入하고는 있으나 가장 普通의 경우 「요오맨」은 4~30 頭 以上을 購入할 수는 없었다. 「윌트셔」(Wiltshire)의 어느 「매너」에서는 모든 贍本保有農이 共同地에 80~200 頭의 羊을 가지고 있다.⁽³⁹⁾ 「요오맨」이 所有하는 羊數

(32) Hoskins. *op. cit.*, p. 167.

(33) 「글로스터」(Gloucester)의 한 「요오맨」은 1608 년에 8 名의 男子使用人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 「요오맨」의 遺言書에는 3~5 名이 나타나고 있다. Campbell, *op. cit.*, p. 212.

(34) R.H. Tawney, "An Occupational Census of the Seventeenth Century," *English Economic Review*, Oct. 1934 參照.

(35) 豆類와 大麥은 主로 羊의 飼料였다. 『偶然히도 이들 豆科作物의 廣範한 利用은 다른 觀點에서 若干의 技術的 進歩를 示顯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豆科作物은 白穀作物이 使用하여 疲弊케 한 土壤에 窒素를 보내기 때문이다.』 R.H. Hilton, "Medieval Agrarian History," *The Victoria History of the Counties of England (V.C.H. 라고 略記함)*, Leicestershire, Vol. II, London, 1954, p. 160.

(36) Hoskins, *op. cit.*, p. 175.

(37) Thirsk, "Agrarian History," *V.C.H. Leicestershire*, Vol. II, p. 213.

(38) *Ibid.*, pp. 175-6.

(39) Campbell, *op. cit.*, p. 204.

는 地方的인 偏差와 「요오맨」自身的 經濟力에 따라서 相異했으나 放牧地帶에서는 約 150~200 乃至 300 頭였을 것이다.⁽⁴⁰⁾

以上에서 우리는 「요오맨」이 富裕化하는 經濟的 基礎가 市場生産을 위한 農業經營에 있었다고 해서 그 一例를 「레스터셔」에서 考察했다. 叙上한 「요오맨」의 土地保有條件은 이와 같은 合理的 農業經營에 뒷받침되어서 「요오맨」의 地位를 改善시키고 그들을 富裕化시켰던 것이다.

以上 論한바와 같은 諸要因에 依해서 16 世紀의 「요오맨」은 經濟的 地位를 改善할 수 있었던 것이며 「허즈번드맨」과 그 以下の 農民과는 明確히 區別되고 「젠틀맨」마저 羨望할 만큼 富裕했다. 앞에서 引用한 「폴러」의 자랑스러운 叙述은 이러한 「요오맨」의 富裕함을 如實히 말하여 주고 있다. 「요오맨」中에서도 特히 中世에서도 農民의 大多數가 他州의 自由人과 같은 程度의 自由를 享受했다고 말해지는 「켄트」⁽⁴¹⁾ 地方的 「요오맨」의 富는 有名하며 이 地方에서 잘 알려진 詩는 該州의 「요오맨」의 富裕함을 읊되,

「웨일즈」의 騎士

「카알즈」의 「젠틀맨」

北部州의 領主,

僅少한 地代를 支拂하는

「켄트」의 「요오맨」은

그들 三者를 모두 살 수 있다.

라고 하였고 當時의 有名한 「벨라드」는 『「나는 「켄트」에 집과 土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求婚者는 그 求婚을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되었다.』라고 부르고 있는 程度다.⁽⁴²⁾ 「요오맨」이 騎士에 맞먹을 程度의 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의 「벨라드」도 읊고 있다.

모두가 健康에 祝福되고

그리고 그 富로 말하면

幸運의 女神의 慈悲로운 恩寵으로

富裕한 「요오맨」은

(40) Tawney, *op. cit.*, p. 239.

(41) Vinogradoff, *Villainage in England*, p. 206.

(42) Campbell, *op. cit.*, p. 77. 「켄트」의 「요오맨」이 特히 富裕한 理由로서 「갠벨」女史는 이 地方에 일찍부터 存在하고 있던 均分相續制(*gavelkind*)를 들고 있다. 該制度에 關해서는 Vinogradoff, *op. cit.*, pp. 207—8 參照.

他處의 騎士보다 나은 것이다.⁽⁴³⁾

이렇게 富裕해진 「요오맨」의 農業經營規模는 實際에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레스터셔」의 「요오맨」에 關한 「호스킨스」의 分析에 依해서 보면 16世紀 中葉까지는 家屋等은 「히즈번드맨」과 別로 다른 質素한 生活을 하고 있으나⁽⁴⁴⁾ 그 保有地는 100~200「에이커」의 農場과 其他의 放牧地를 占有하고 있었던 것 같다. 例를 들면 「험버스톤」(Thomas Humberstone)은 1535년에 「보치프」(Beauchief) 修道院으로 148「에이커」의 農場을 年地代 53s. 10d.로 80年 契約으로 借地하고 있었다. 그는 1510년에도 同修道院으로 27年 期間으로 敎區 牧師에게 納入될 모든 10分의 1 稅穀物 羊毛과 仔羊 敎會附屬地의 모든 地代와 利益 그리고 2個의 10分의 1 稅納屋을 年地代 £26 13s. 4d.로 賃借하고 있다. 그의 地代總額은 現代의 貨幣價値로 換算하면 年 £900—£1000에 達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모든 繁榮하고 있는 「요오맨」이 그러했듯이 長男을 敎會에 보내고 있다.⁽⁴⁵⁾ 가끔 引用되는 「래티머」(Hugh Latimer)의 記述에 依하면 「요오맨」인 그의 父親은 自己의 所有地는 없고 年地代 £3~£4의 農場을 借地해서 6名의 農業勞動者를 雇傭해서 耕作하고 있으며 酪農用 雌牛 300頭와 羊 100頭를 飼育하고 있었다. 그래서 「래티머」를 學校에 보내고 그의 姉妹에게 £5~£20의 結婚持參金을 마련해 주고 있다.⁽⁴⁶⁾ 「레스터셔」의 가장 富裕한 「요오맨」이었던 「피틀링·파버」(Peatling Parva)의 「브래지트」(Thomas Bradgate)를 보면 그 動産에 關한限 3~4名의 「에스콰이어」를 雇한것과 같은 價値를 가지고 5個敎區에 小土地를 所有하고 있었다. 그의 主農場은 그의 父親이 保有하고 있던 家屋을 包含한 賃借農場이며 그는 그 農場에 「피틀링·마그너」(Peatling Magna)의 모든 修道院土地를 賃借해서 附加하고 있다. 또 放牧을 위해서 340「에이커」의 圍牆地를 賃借하고 있으며 많은 家畜中에서 羊은 400頭に 오르고 있다.⁽⁴⁷⁾

16世紀 後半期 「요오맨」의 保有地面積에 關해서 「캠벨」女史는 主로 農耕地帶에서는 25~200「에이커」 牧畜地帶에서는 富裕한 「요오맨」은 500~600「에이커」에 達한다고⁽⁴⁸⁾ 推定

(43) Campbell, *op. cit.*, p. 146.

(44) 「호스킨스」는 「레스터셔」의 「요오맨」이 家屋建築을 크게 始作한 것은 1560年 以降이며 그것은 「요오맨」의 土地購買時期와 一致한다고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6世紀 前半期에 富裕한 「요오맨」은 「히즈번드맨」과 같이 집에서는 質素하게 生活했다. 그의 富는 耕地에 作物에 그리고 家畜에 있었던 것이며 얼마만큼한 剩餘는 (훌륭한 家屋과 家財에 消費하기 보다는) 土地에의 再投資에 自己耕地에 다른 耕地를 附加하는데에 家畜을 増殖시키는데 쓰여졌다. 그러나 「엘리자베드」治世의 初期에는 富裕한 「요오맨」은 (誇示하기 위해서 돈을 消費했다.)』 Hoskins, *op. cit.*, p. 133.

(45) *Ibid.*, p. 151.

(46) *Ibid.*, p. 152.

(47) *Ibid.*, pp. 153—4.

(48) Campbell, *op. cit.*, p. 102.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얼마나 「요오맨」이 富裕해졌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上昇하는 階層이 있으면 그 對極에는 沒落해가는 階層이 있는 것이며 16世紀의 「요오맨」도 그 例外는 아니다. 叙上한바와 같은 富裕한 「요오맨」이 큰 風波에 견디고 또 는 그것을 利用해서 着實히 自己의 地位를 改善해 간데 對해서 上昇의 機會를 잡을 수 없는 貧困한 많은 「요오맨」이 있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16世紀 「요오맨」의 地位를 考察하는 경우에 그들 全部가 그 經濟的 地位를 改良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 樂觀的 面만을 強調하는 것은 「요오맨」의 一面만을 보는 것이며 正當하지 않을 것이다. 16世紀 英國의 農村은 큰 社會經濟的 變動을 經驗했고⁽⁴⁹⁾ 그러한 變動에 依해서 많은 農民이 土地에서 追放되고 있다는 것은 當時의 文獻과 史料에 數량이 나타나고 있다. 이 過程은 當然히 「요오맨」에 相當한 影響을 주었을 것이므로 다음에 우리는 「요오맨」의 存在를 農業變化라는 背景에서 考察해야 할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助教授

(49) Tawney, *op. cit.*, p. 180.

<Summary>

A Study on the English Yeoman

(Part I)

*Jong-Hyun Kim**

In this paper, it is intended to trace the process of coming into existence of the English yeoman which was a unique existence in the English rural community in the sixteenth century, and to inquire into its form of existence in the period of agrarian change of the century.

The yeoman was the middle class in the English rural community which had come into existence in the process of rural differentiation. The causes of the rural differentiation were, in the spread of money economy, the commutation of labour services, and in the leases of demesne—the breaking of manorial system. Furthermore, as E.A. Kosminsky said, the causes existed already in the pre-feudal distribution of land and the manorial system itself. As a result of the rural differentiation, lands not only of freeholders but also of customary tenants who had held lands on the principle of uniformity in the middle ages were differentiated, and the inequality of their wealth was expanded. Such rural differentiation went on widely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and with some local exceptions, the standard size of holdings was almost not to be seen in those days.

In such process, the peasants who could improve their economic situations had enlarged their holdings by leasing demesnes from landlords, purchasing lands from the poorer peasants, and reclaiming waste lands. Thus the substantial peasant class which lied between the gentleman and the husbandman had been come into being. This is, indeed, the yeoman which had marked the

* The author is research membe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and assistant professor of economic history,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English rural community in the sixteenth century as “a pillar of the state” or as “an estate of people almost peculiar to England”. The meaning of the word “yeoman” was originally ambiguous and its contents also underwent a change in the passing of the day. In the strict legal sense, the yeoman meant a freeholder “who may dispend of his own free lande in yerely revenue to the summe of 40 s. sterling”. But this strict legal definition was ceased to be used and the wider economic definition was used in the sixteenth century. In the economic sense, the yeoman was “a substantial rural middle class whose chief concern was with land and agricultural interests”, and was “any well-to-do farmer beneath the rank of gentleman, even though he was not a freeholder”. So the yeoman was composed of freeholders who had paid the fixed money rents for a long time and rised steadily with favorable opportunities, of copyholders who had improved their situations in the process of the break-up of manor, and of a part of leaseholders. Indeed, “the cultivation of the soil passed out of the hands of its owners, and the break-up of the demesne paved the way for the formation of numerous and widely-spread class of small peasant proprietors and tenant farmers—the yeoman of England”, and in such process, the yeoman had come into existence.

From the viewpoint of the forms of land tenure, there were five sorts of tenure: knight service, socage, copyhold, frankalmoin, and sergeantry. But tenures with which we concern in connection with the yeoman are first three. In the sixteenth century, in general, burdens of freeholders who held free lands (knight service and socage) and of whom the upper class of yeoman was composed were very slight, and they became practically a modern type of owners. Freeholders were exempted from feudal burdens from the early days, enjoyed a secure tenure, and could improve their economic situations on their own initiative. Getting wealthier under the protection of common law, even in the midst of the agrarian change, they became a source from which the gentleman was recruited in the next generation.

Comprising many varieties of degree in themselves, copyholders of whom a great part of the yeoman was composed were, in general, under the favourable terms of tenure and, as we shall see later, even though some of them were declining in the period of agrarian change, had the foundation on which they could rise to more substantial peasants by the unearned increment derived from fixed rents for a long time and by the protection of customs. It may be given as a conclusion that freeholders were protected by common law and their economic burdens were almost disappeared, and copyholders were protected by customs and were able to gain the unearned increment by the fixation of rents for a long time and the rise of price.

Having such favourable terms of land tenure, the yeoman consolidated lands into a compact large farm by the small enclosure and the exchange of lands, enlarged the scale of their business by the lease of demesne, and became wealthier by the rational agricultural production for market. As the small enclosure which the yeoman had done was performed by agreements on behalf of whole peasants, it was against the enclosure performed at the cost of peasants by lords and big farmers. The lease of demesne was also considered to be consistent with common interests of peasants. Those small enclosures and leases of demesne were important factors for enlarging holdings which the yeoman held. Moreover, the yeoman had endeavoured to improve arable lands, soils and agricultural implements, and to specialize the agricultural production for the rationalization of agricultural management. Thus, in the later part of the sixteenth century, the yeoman became substantial to the extent that their holdings were ranging from twenty-five to two hundred acres in chiefly arable regions and those of the well-to-do yeoman were five or six hundred acres in grazing regions.

Next we have to consider the yeoman's situation in the light of the agrarian change in the sixteenth century.